



2025. 12.

국회에산정책처 | 개정세법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Examination Progress and Highlights of the 2025 Tax Act Revision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총괄 |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작성 | 장설희, 신홍철,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이정훈, 박성은, 박정환
이유섭, 신미정,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

지원·편집 | 엄상미 행정실무원
손희정 자료분석연구원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02) 6788-4834 | tp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5.12.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국회 세법심사는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795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예산안과 함께 법정 기한인 12월 2일에 국세 관련 세법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세법개정안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2026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장에서는 국회 세법개정의 경과와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II장에서는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과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III장에서는 정부제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 수정·반영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IV장에서는 세법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채택된 부대의견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향후 세법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일러두기

1.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 항목임
 2.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개정 항목임
 3.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개정 항목임
 4. '자산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개정 항목임
 5. '기타'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항목임
 6. 다음 법률명에 대해서는 괄호 안의 약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음
국세기본법(국기법), 국세징수법(국징법), 개별소비세법(개소세법),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7.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의원안'으로,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8. 본 보고서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5년도) 대비 증감한 누적세수를 합산한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임
 9. 개정연혁은 개정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10. 본 보고서의 '현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하며,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

차 례

I. 개 관 / 1

1. 2025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3
2. 심의 경과	7
가. 위원회 심사	7
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10
다. 본회의 심의·의결	12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15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15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22
4.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35
가.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35
나.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36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38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41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 45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47
가. 총괄	47
나. 주요 논의사항	49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74
가. 총괄	74
나. 주요 논의사항	75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101
가. 총괄	101
나. 주요 논의사항	102

차 례

4. 자산세제 및 기타세제(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13
가. 총괄	113
나. 주요 논의사항	114

III.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131

1.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33
가. 「소득세법」	133
나. 「조세특례제한법」	133
다. 「관세법」	135
라. 「종합부동산세법」	136
마. 「국세징수법」	136
2.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141
가. 「부가가치세법」	141
나. 「조세특례제한법」	141
다. 「개별소비세법」	144
라. 「관세법」	145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153

1. 부대의견	155
가. 「소득세법」 부대의견: 1건	155
나.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7건	155
다. 「관세법」 부대의견: 1건	158
라. 「종합부동산세법」 부대의견: 1건	158
마. 「국세징수법」 부대의견: 1건	158
2. 향후 논의과제	161

부 록 - 확정된 2026년 총수입 예산 및 정부안 대비 조정 내역 / 167

표·그림 차례

〈표 차례〉

[표 1] 2025년 정기회 심의대상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4
[표 2] 2025년 정기회 심사대상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현황	7
[표 3]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8
[표 4]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현황 및 지정 결과	11
[표 5] 2025년 국세 법률안 관련 본회의(12.2.)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	12
[표 6] 2025년 국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결과	14
[표 7]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주요 개정 내용	15
[표 8]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주요 개정 내용	16
[표 9]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6
[표 10]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주요 개정 내용	17
[표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요 개정 내용	17
[표 12]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 내용	18
[표 13] 법인세율 주요 개정 내용	18
[표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주요 개정 내용	19
[표 15] 영상 및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9
[표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점증구조 도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20
[표 17]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확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20
[표 18]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관련 주요 개정 내용	21
[표 19] 내국추가세 도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21
[표 20] 심사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합의 결과	22
[표 21]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4
[표 22]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6
[표 23]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7
[표 2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8
[표 25] 법인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일반법인 세율 기준	28
[표 26] 법인세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9

[표 27]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9
[표 28]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0
[표 29]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31
[표 30]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2
[표 31]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33
[표 32]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4
[표 33]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5
[표 34]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36
[표 3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6~2030년	38
[표 36]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39
[표 37]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40
[표 38]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0
[표 39]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3
[표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7
[표 41]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9
[표 4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2
[표 43]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63
[표 44] 법인세율 개정연혁: 일반법인 기준	76
[표 45] 법인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일반법인 적용세율 기준	77
[표 4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주요 연혁	78
[표 47]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9
[표 4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주요 연혁	80
[표 49]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1
[표 50]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주요 연혁	83
[표 51]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상구조 도입 및 사후 추징규정 정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4
[표 5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주요 연혁	86

[표 53] 지방이전 기업 감면기간 확대,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7
[표 54]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87
[표 55]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3
[표 56]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5
[표 5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6
[표 58]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7
[표 59]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08
[표 60]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 인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5
[표 61]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6
[표 62] 체납자 실태확인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7
[표 63]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8
[표 64] 내국추가세 도입 관련 개정 내용	119
[표 65] 자산세제 및 기타세제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19
[표 66] 2025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137
[표 67] 의원발의안 중 개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145
[표 68] 부대의견 채택 안건	159

〈그림 차례〉

[그림 1] 고용기간에 비례한 공제금액 점증구조 도입	82
-------------------------------------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개 관

1 2025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2025년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세 분야 법률안 12건이 심의¹⁾·의결
 - (위원회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동안 14건의 국세 분야 법률안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11월 30일 11건을 의결
 - (심사대상 법률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의결 법률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 (본회의 심의)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10건의 법률안²⁾³⁾과 심사기한 도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⁴⁾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합한 12건의 국세 관련 법률안 의결⁵⁾

- 1) 심의(審議)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審査)하고 토의(討議)함’으로, 국회법은 본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의’(제93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사’(제58조)라는 용어를 사용함 (임중훈·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 2)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국세 관련 법률안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이 입안된 8건의 법률안은 해당 대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3)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11건의 법률 중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10건은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10.)에서 가결되었으며 발간일(2025.12.17.) 현재 본회의에 부의
- 4)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의 지방세 관련 법률안을 12월 16일 심사·의결하였으며, 발간일(2025.12.17.) 현재 체계자구심사를 위

[표 1] 2025년 정기회 심의대상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심의 항목 수)	주요 내용
「소득세법」 (4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서영교·박성준·강승규·정일영·안도걸·박정·박수민·조정훈·유효중·전재수·윤준병·이용선·이수진·강대식·윤영석·김태선 의원안, 정부안) -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인하(임광현·김영진 의원안, 정부안)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신영대·김영진 의원안, 정부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확대(최은석 의원안, 정부안) -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정일영·정성호·유효중·전재수·윤준병·이수진·한지아·추경호·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임광현·신영대·서영교·정일영·송언석·김승수·조인철·윤준병·김주영 의원안) - 취학 전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비용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강승규·정일영·백승아·이준석 의원안)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 등 신설(서영교·조승래·이원택·이해민·유동수 의원안)
「법인세법」 (2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김미애·김기표·안도걸·최은석·윤준병·윤종오 의원안, 정부안) - 연결납세제도 보완 등(천하람 의원안, 정부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정부안) -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정부안)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최은석·박민규 의원안) -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 강화(차규근 의원안)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정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3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법인과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 추가(차규근 의원안, 정부안) -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포함(정부안)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정부안) - 유산취득세 전환(정부안)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엄태영·권성동·박충권·유상범·최은석·박수민 의원안) - 상속공제 금액 상향(김은혜·안도걸·정일영·권성동·박성준·이종욱 의원안) -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최은석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정부안) -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도걸·정준호 의원안)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에 대한 제재 강화(최은석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김영환 의원안)

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법률명 (심의 항목 수)	주요 내용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김영환 의원안, 정부안) - 원료용 증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정태호·최은석·박성훈 의원안)
「종합부동산세법」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정부안) -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정부안)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하 및 세율인상(차규근 의원안)
「국세기본법」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박대출 의원안, 정부안) -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정부안)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국세징수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정부안)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김영진 의원안, 정부안)
「관세법」 (1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정부안) -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세율불균형 물품 관세 감면 기간 연장 등(박수영·진성준·정태호 의원안)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차규근 의원안, 정부안)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김영진 의원안, 정부안)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강선우·정태호 의원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정부안)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정부안) -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보완(정부안)
「교육세법」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 등(윤영석·박수영 의원안, 정부안) -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수익금액)의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박수영·최은석 의원안) - 수익금액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 명확화(최은석 의원안) - 한국은행과의 스와프거래 수익에 대한 현행 세율 유지(정부안)
「조세특례 제한법」 (171건)	<p>[소득세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행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만희·복기왕·김태호·정희용 의원안, 정부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한정애·이수진·추경호·양부남 의원안, 정부안)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만희·주철현·임오경·윤준병·이양수·박희승 의원안 등, 정부안) 및 준조합원 저율 분리과세 도입(정부안)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박수영·이소영·유상범·안도걸·김현정·차규근·임이자·윤영석·최은석·박수민·박성훈 의원안, 정부안)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송석준·이종욱·서영교·이만희·추경호·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도걸 의원안)

법률명 (심의 항목 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정태호 의원안) <p>[법인세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등(박수민 의원안, 정부안) - 전력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김태년·정일영·진성준·안도걸·신영대·정태호·김은혜·김상훈·박지혜·박성민·최은석·윤영석 의원안) - 지방이전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기간 확대(윤준병·한병도·김정재·김형동·권영진·윤영석·추경호·서영교·강명구·주진우 의원안, 정부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이인선·윤준병·천하람·추경호·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민형배·정성호·정연욱·박성훈·조승래·김승수 의원안, 정부안) - 장기고용에 따른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사후 추징규정 정비 등 통합고용세액 공제 전면 개편(정부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윤영석 의원안, 정부안)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편(박성훈·이병진·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p>[소비세·자산세 및 기타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정태호 의원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이병진·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서영교·엄태영·김영진·이원택·이병진·송옥주·신영대·추경호·최은석 의원안 등, 정부안) -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의무 신설(김영환·정성호 의원안)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강선우 의원안)
「주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성주류 주종 신설 및 세율 적용 근거 마련(안도걸·박수영 의원안)
「농어촌특별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정태호 의원안)

주: 각 법률별 주요 안건에 대해 정리

2 심의 경과

가. 위원회 심사

(1)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 (법률안 상정) 국세 관련 법률안 총 500건 신규 상정 및 조세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500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신규 상정·회부 법률안 및 기존 조세소위원회 계류 법률안 등 총 795개 법률안(정부안 14개, 의원안 781개) 심사
 - 조세소위원회 총 7회 개최
 - 11.12.(수), 11.18.(화), 11.20.(목), 11.24.(월), 11.25.(화), 11.26.(수), 11.30.(일)

[표 2] 2025년 정기회 심사대상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현황

심사대상 법률	개정안 건수		심사대상 법률	개정안 건수	
	정부안	의원안		정부안	의원안
「국세기본법」	2	16	「교육세법」	1	5
「국세징수법」	1	4	「조세특례제한법」	1	485
「소득세법」	1	137	「관세법」	1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47	「농어촌특별세법」	-	3
「법인세법」	1	23	「개별소비세법」	1	7
「종합부동산세법」	1	11	「주세법」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1	「부가가치세법」	1	17
			계	14	781

주: 1. 2025년 정기회 11월 조세소위원회 의사일정 기준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11.25. 조세소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되었으나,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수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률안 의결) 11월 30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의하여 그간의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여·야 간사 간 협의사항을 반영한 국세 관련 법률안 11건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대안 가결 8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원안 가결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수정 가결 1건) 「종합부동산세법」

[표 3]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심사 결과 ¹⁾	비고 ²⁾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안 가결	의원안(2) + 정부안(1)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	대안 가결	의원안(1) + 정부안(1)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대안 가결	의원안(31) + 정부안(1)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안 가결	의원안(2) + 정부안(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원안 가결	정부안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대안 가결 (조특법)	의원안(245) + 정부안(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³⁾	1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수정 가결	정부안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안 가결	의원안(2) + 정부안(1)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대안 가결	의원안(2)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안 가결	의원안(11) + 정부안(1)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원안 가결	정부안
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계류	본회의 자동부의
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계류	(정부안)

주: 1) 심사 결과 중 '계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률안을 뜻하며, 이들 중에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2) 괄호안의 숫자는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 건수
 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됨

(2)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 국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11건 중 10건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안된 대안으로서 심사기간(11.30.)이 도과하여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음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안된 대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대상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10.)에서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2025.12.17. 기준)
- 지방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5.12.17. 기준)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된 법률안은 총 24건이며, 이 중 국세 관련 법률안은 19건임
 - 국세 관련 법률안 19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8건으로 구성됨
 - 그 외는 비조세 법률안으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편 등 교육세 재원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 및 의원발의 법률안 5건임
- 11월 28일 지정신청 법률안 중 16건이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국세 관련 법률안은 12건임
 - 국세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1건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1건으로 구성됨
 - 비조세 법률안은 「영유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특별회계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3건과 국유재산특례 관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법률안 1건 등 4건임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이 「국회법」에서 정한 심사기한(11.30.)을 초과함에 따라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 자동 부의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과 「영유아특별회계법안」 등 총 16건(이 중 국세 관련 법률안은 12건)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 (국세 관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11.30.)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등 국세 관련 법률안 10건은 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표 4]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현황 및 지정 결과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885	정일영의원 등 11인	기재위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394	정일영의원 등 12인	기재위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694	김성원의원 등 10인	기재위	×
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528	윤종오의원 등 12인	기재위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1	정 부	기재위	○
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2	정 부	기재위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3	정 부	기재위	○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654	정 부	기재위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5	정 부	기재위	○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6	정 부	기재위	○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7	정 부	기재위	○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8	정 부	기재위	○
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59	정 부	기재위	○
1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60	정 부	기재위	○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61	정 부	기재위	○
16	영유아특별회계법안	13036	문정복의원 등 23인	교육위	○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110	정 부	기재위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143	윤종오의원 등 10인	기재위	×
1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420	박수영의원 등 10인	기재위	×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669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재위	×
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770	김영환의원 등 10인	기재위	○
22	고등·평생교육자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936	김문수의원 등 12인	교육위	×
23	고등·평생교육자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025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위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026	고민정의원 등 11인	기재위	○

주: *는 조세 관련 법률안임

다. 본회의 심의·의결

-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국세 관련 법률안 12건이 다음날인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상정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12.2.)을 통해 12월 2일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발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국세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찬반토론이 진행됨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 등은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찬반의견이 제기됨

[표 5] 2025년 국세 법률안 관련 본회의(12.2.)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

찬반토론 대상 법률안	찬반토론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p>[반대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을 낮춰 배당을 확대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거나 국내 대기업은 총수일가(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총수일가의 입장에서는 지분율에 비례해 분배되는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적어 분리과세에 따른 배당확대 효과가 제한적이고, 구조적으로 분리과세에 따른 감세혜택이 고소득자본가에게 집중되어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 또한 배당을 확대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지분율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차규근 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상위 극소수 집단에 집중되고, 부자 감세로서 세수감소에 따른 다른 세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됨. 아울러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은 종합소득 과세체계의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제도의 혜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함(전종덕 의원) <p>[찬성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배분의 공정성, 효과성 측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주주는 배당 외에도 고액의 임금이나 주식 양도차익 등을 통해 기업의 잉여이익을 독식할 수 있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여 배당 확대를 유도해 일반주주에게도 잉여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정의로움. 아울러, 기재위 대안은 배당이 확대된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소영 의원)

찬반토론 대상 법률안	찬반토론 주요 내용
<p>「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p>	<p>[반대토론] - 과세표준 전 구간 법인세율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기업의 국내 투자유인을 낮추는 문제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G7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고, 세계적 법인세율 인하 추세 속 우리나라만 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내 조세경쟁력을 악화시켜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세율을 낮춰 기업의 혁신의지를 높이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박성훈 의원)</p> <p>[찬성토론]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함. 첫째, 최근의 세수결손 및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세율인상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이 요구됨. 둘째, 세계 각국은 경제상황에 맞추어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영국 등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했음. 셋째, 세율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AI 등 첨단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등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 그 밖에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정일영 의원)</p>
<p>「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p>	<p>[반대토론] - 정부여당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금융권은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세율인상안을 통보받았음. 금융·보험업계는 세율인상에 따른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금융·보험업분 교육세가 배분되는 교육 관련 특별회계가 5년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교육세율 인상도 5년의 일몰기한을 두고 그 효과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번 세율인상은 업권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강명구 의원)</p> <p>[찬성토론] - 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요구됨. 한편, 1981년 이후 금융·보험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크게 증가했으나 교육세율은 그대로이므로 개편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안에 따른 적용대상은 거대 금융·보험업자로 한정되어 조세형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금융·보험업자의 당기순이익 대비 교육세액 비중은 3~4%로 세율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안도걸 의원)</p>

-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세 관련 법률안 12건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당일 의결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대로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정부 제출안(원안)대로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정기회 동안 법인세율 인상 및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표 6] 2025년 국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결과

연번	법률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안가결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1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 본 절에서는 세법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
 - 이 외 안건에 대한 상세 개정내역은 II장 참조
- **〔소득세법〕**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추가,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표 7]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 본인 및 장애인(나이* · 소득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 시 18세 미만 한정 - 직계 비속 등(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본인 및 장애인(현행) - 직계 비속 등에 대한 소득요건 폐지
세액공제 적용대상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추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표 8]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비과세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좌동)
비과세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년 연장 및 자녀 수에 비례한 기본공제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등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신 특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의 누진세율(14~30%)로 분리과세를 적용함

[표 9]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대상기업	(신설)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단, 2024 사업연도 대비 배당 비(非)감소) * 투자회사 등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특례배당소득</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14%</td> </tr> <tr> <td>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 <td>25%</td> </tr> <tr> <td>50억원 초과</td> <td>30%</td> </tr> </tbody> </table>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적용기한	(신설)	2026년 지급 배당분부터 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까지								

- 농·임·어업계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저소득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이외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의 경우 2026년 5%, 2027년부터 9% 등으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 저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표 10]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세율	(과세특례) - 소득발생기간 기준	(과세특례) - 상품가입일 기준			
	소득 발생기간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가입일	'28.12.31.까지	'29.1.1.~'29.12.31.	'30.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① 농·임·어업인 조합원,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가입자			
		②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가입자(농·임·어업인 조합원 제외)			
		가입일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행 30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1명당 50만원)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현행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1명당 25만원) 상향 조정함

[표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 조정

[표 12]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고향사랑기부금액 10만원 초과: 초과분의 15%(단, 특별재난지역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고향사랑기부금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해당 구간의 40% - 고향사랑기부금액 20만원 초과: 초과분의 15%(단, 특별재난지역은 30%)

□ (「법인세법」) 법인세율 인상 등

-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1%p 인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19~24%인 법인세율을 20~25%로 1%p 인상

[표 13] 법인세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과표구간	현 행		개 정	
		일반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일반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	2억원 이하	9	19	10	20
	2~200억원	19		20	
	200~3,000억원	21	21	22	22
	3,000억원 초과	24	24	25	25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개편

- 기업의 환류대상에 현행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외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범위를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

[표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주요 개정 내용

과세표준	현행	개정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배당 추가
환류해야 하는 소득 (기업소득 대비 비중)	투자포함형: 60~80% 투자제외형: 10~20%	투자포함형: 65~85% 투자제외형: 20~40%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5%p 인상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표 15] 영상 및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기본공제 (A)	추가공제 (B)	최대 (A+B)		기본공제 (A)	추가공제 (B)	최대 (A+B)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	대기업	5	10	15	대기업	10	10	20
	중견기업	10	10	20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5	15	30	중소기업	15	15	30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웹툰콘텐츠 세액공제율 (%)	(신설)				공제율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적용기한	(신설)				2028.12.31.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 고용기간에 비례한 공제금액 점증구조를 도입하고,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 인원 수를 초과하는 고용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

[표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점증구조 도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구분	공제액		중견(3년)	대기업(2년)	구분	기본	우대	
공제액 (만원)	중소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수도권	1년	400	700
		수도권	지방				2년	900	1,600
	지방			중견(3년)	대기업(2년)	중견	3년	1,000	1,700
		수도권	지방				1년	700	1,000
	기본	850	950	450	-	중견	2년	1,200	1,900
	우대	1,450	1,550	800	400		3년	1,300	2,000
적용 기한	2025.12.31.				2028.12.31.				

※우대: 청년, 고령,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등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투자누계 및 지방근무 인원수에 비례한 감면한도 신설 및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사후관리 규정 도입

[표 17]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확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지역	감면율 (%)	감면기간(년)				그 외	지역	감면율 (%)	감면기간(년)				그 외		
감면 내용	낙후	100	수도권	수도권	지방	중규모	7	10	낙후	100	수도권	수도권	지방	중규모	7	10
			연접 지역	광역시	도시	연접 지역					광역시	도시				
	그외	50	2	2	3	3	2	그외	50	3	3	4	5	5		
			5	5	5	5	7									
	적용 기한	2025.12.31.							2028.12.31.							

※낙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교육세법」**)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등
 -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

[표 18]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금융·보험업자 세율 인상	- 세율: 0.5%	-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5%, 1조원 초과 구간 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등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중 최저한세율(15%) 미만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 도입

[표 19] 내국추가세 도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대상	(신설)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중 최저한세율(15%) 미만인 기업 *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 설립등록된 투과기업*에도 적용 ※ 투과기업: 기업단위가 아닌 소유자, 구성원 단위에서 과세되는 기업
세액		$[15\% - \text{국내구성기업 실효세율}] \times \text{초과이익}^* + \text{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본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 가액의 일부로 산정)을 제외한 금액
내국추가 세액배분액		①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한 배분방식, ②국내구성기업간 합의에 따른 자율 배분방식 중 선택하여 배분
신고 및 납부 등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는 현행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과 동일하게 적용

- (그 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1) 개요

-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중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동 개정안들 중 일부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거나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 외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합의

[표 20] 심사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합의 결과

구분	찬성	반대	합의 결과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인하여 국내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유입을 독려할 필요	- 배당소득의 분포가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 정부안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5% 세율 적용 - 심사과정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 50억원 구간은 25%로, 50억원 초과 구간은 30%로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 비과세 혜택 축소에도 실질 이자수준은 일반 은행권에 비해 높으므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필요	- 비과세 혜택 축소시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탈 가능성 등 고려시 신중 접근 필요	- 정부안은 저소득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규정 - 심사과정에서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
법인세율 인상	-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 - 2022년 세율인하 당시 투자 증진 등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세율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 국내투자 유입 감소 등 부작용 우려 - 정권교체 시기마다 세율을 변동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 정부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대해 세율 1%p 인상 - 조세소위 기간 중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 의되어 의결

구 분	찬성	반대	합의 결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 1조원 초과 매출 대형 금융사의 충분한 담세능력	- 서울인상분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	- 정부안은 과표 1조원 초과구 간 세율을 0.5%p 인상 - 조세소위 기간 중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 의되어 의결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세제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 제고 필요	- 이미 국가 전략기술 에 대한 우대 공제 제도가 있어, 추가 제도 도입시 산업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 될 우려	- 정부가 수행 중인 용역 결과 를 토대로 추후 재논의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 응능부담 원칙에 따 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 는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	- 유산세에서 유산취 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세입기반 약화 우려	-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상속 세 과세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 여 추후 재논의

(2) 주요 안건별 심사⁶⁾ 쟁점

- 본 절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되어 의결된 경우,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수정 없이 의결된 경우,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되지 않은 안건 순으로 정리
 - (쟁점사항이 수정된 주요 안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 (쟁점사항에 대한 수정 없이 의결된 주요 안건)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개정되지 않은 주요 안건)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유산취득세 전환
 - 이 외에 안건에 대한 상세 개정내역은 II장에서 세목별로 별도 정리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소득세)
 - 관련 안건
 - 고배당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안도걸·유상범·윤영석·이소영·김현정·박성훈·차규근 의원안, 정부안)
 - 주주환원(자사주소각 포함) 확대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박수영 의원안)
 - 차등배당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차규근 의원안)
 - 전체 주권상장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박수민·임이자·최은석 의원안)

[표 21]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박수영 의원안 ¹⁾	안도걸 의원안 ¹⁾	유상범 의원안 ¹⁾	윤영석 의원안 ²⁾
분리과세 대상기업	(신설)	주권상장법인* 중 ①+② ①밸류업 공시 ②주주환원액** 직전 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배당 및 자사주소각액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40% 이상 ②배당성향 20%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10% 이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 배당소득 중 50% 만 분리과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30% 이상 ②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 지분율 10% 이상 대주주는 특례에서 제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40% 이상 ②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포함

6)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찬반 쟁점이 있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

세울	(신설)	구분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원천징수세율	9%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14%
종합과세자	25%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5%	3억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20%	3억원 초과	35%
적용기한	(신설)	2026~2028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2028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2028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구분	이소영 의원안 ²⁾	김현정 의원안 ²⁾	박성훈 의원안 ²⁾	박수민 의원안 ²⁾	임이자 의원안 ²⁾				
분리과세 대상기업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35% 이상 *투자회사 등 제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 배당성향 35%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또는 직전년 도 대비 5% 이 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or ③ ① 배당성향 35%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또는 직전년 도 대비 3% 이 상 배당증가 ③ 당기순이익 0 이하 *투자회사 등 제외	주권상장법인* *투자회사 등 제외	주권상장법인* *투자회사 등 제외				
세울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3억원 초과	25%	3억원 초과	25%	3억원 초과	25%	
적용기한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구분	최은석 의원안 ²⁾	차규근 의원안 ¹⁾	정부안 ¹⁾	개정 ¹⁾					
분리과세 대상기업	주권상장법인* *투자회사 등 제외, 상장법인에 60% 이 상 투자 펀드 포함	주권상장법인 중 ①+② 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② 소액주주* 배당금이 최대주주 등 대비 1.5 배 이상 * 지분율 1% 미만 + 액면가 3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단, 직전년도 대비 배 당소득 비(非)감소 *투자회사 등 제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대비 10% 이 상 배당증가 (단, 2024년도 대비 배당소득 비(非)감소 *투자회사 등 제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14%
세율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27%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3억원 초과	35%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적용기한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2026년 지급분~ 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출·발의·개정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

○ 주요 심사 의견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환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조세 형평성 저해 및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됨
-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최고세율(35%)은 배당 확대 유인으로 부족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율(2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행 전 배당 축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음

[표 22]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 구체적인 특례대상 기업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복잡한 요건보다는 전체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 존재 - 제도 도입 시, 대주주에게 배당확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주식양도소득세(25%)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고소득·고자산가에 집중된 상황에서 분리과세 도입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 - 기업의 배당이 조세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2015년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같이 정책효과가 없을 경우 불필요한 세수 감소만 야기할 가능성

○ 결론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례배당소득 3억원~50억원 구간의 세율을 25%까지 낮추되,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30%의 세율을 적용
- 대상 요건을 ‘직전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에서 ‘2024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하고, ‘직전 3개연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는 ‘직전연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등으로 변경
- 기업 의사결정 왜곡 방지를 위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조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소득세)

○ 관련 안건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정부안)

[표 23]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 2026년 5%, 2027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저소득* 조합원·회원의 경우 2028년까지 비과세, 2029년 5%, 2030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근로소득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저소득* 조합원·회원의 경우 2028년까지 비과세, 2029년 5%, 2030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근로소득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이외의 경우 2026년 5%, 2027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이외의 경우 2026년 5%, 2027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주요 심사 의견

- 비과세 혜택 축소에도 상호금융기관의 세후 실질 이자 수준은 은행권에 비해 여전히 높아 자금유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대적으로 큰 수준을 보이는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정비 필요성 등에 근거한 찬성 의견과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대형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탈 가능성, 상호금융기관의 최근 재무건전성 악화 및 사회적 금융 기능 등에 근거한 반대 의견이 대립함

[표 2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비과세 혜택 축소에도 상호금융기관의 세후 실질 이자 수준은 은행권에 비해 여전히 높아 자금유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대적으로 큰 수준을 보이는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정비 필요
반대 의견	-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대형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탈 가능성 - 상호금융기관의 최근 재무건전성 악화 및 사회적 금융 기능을 감안하여 세제혜택 유지 필요

○ 결론

-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축소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당초 정부안(근로소득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대비 완화(근로소득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하는 것으로 수정

□ 법인세율 인상(법인세)

○ 관련 안건

-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1%p 인상(정부안·윤준병 의원안)
- 법인세 과세표준 일부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1%p 인상(김기표·안도걸·윤종오 의원안)
- 법인세 과세표준 3단계로 조정 및 세율인하(최은석·김미애 의원안)

[표 25] 법인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일반법인 세율 기준

(단위: %)

과세표준	현행	김미애 의원안	김기표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개정
2억원 이하	9	10	9	9	8	9	10	10	
2~5억원	19		19	19	18	20			20
5~200억원	21	20	21	22	20	22	22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22	25	25		25	25	25	

○ 주요 심사 의견

-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찬성 의견과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킴에 따라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세입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대립

- 논의 과정에서 세율인상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과세표준 상위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자는 의견도 제시

[표 26] 법인세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법인소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여 재정지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후 투자 증진 등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인하된 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환원할 경우에도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다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도 논의과정에서 제시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인상은 기업 경제활동 위축, 국내투자 유입 유인 감소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여 오히려 장기적인 세입기반을 저해할 수 있음 - 정권교체 시기마다 법인세율을 변동시키는 것은 국제 투자자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결론

- 조세소위원회 기간 중 찬성측과 반대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며, 정부안대로 의결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교육세)

○ 관련 안건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윤영석 의원안, 정부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하(박수영 의원안)

[표 27]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박수영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교육세 세율 조정	- 세율 0.5%	-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3%, 1조원 초과 구간 0.5%	-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5%, 1조원 초과 구간 1% - 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율 0.5%	-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5%, 1조원 초과 구간 1%	-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5%, 1조원 초과 구간 1%

○ 주요 심사 의견

- 1조원 초과 수익금액 발생 대형 금융·보험기관의 담세능력을 고려할 때 세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과 금융회사들이 대출이자, 카드수수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상존함
-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교육세 증가액이 전액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투입되어 교육세의 본래 취지인 교육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 분야 간 재정의 재원배분 구조를 재조정하는 방향인 만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교육세의 본래 목적과 사용처 간의 정합성, 나아가 교부금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표 28]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1조원 초과 수익금액 발생 대형 금융·보험기관의 담세능력이 충분
반대 의견	- 금융회사들이 대출이자, 카드수수료 등을 통해 세율 인상을 최종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

○ 결론

- 조세소위원회 기간 중 찬성측과 반대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며, 정부안대로 의결

□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법인세)

○ 관련 안건

-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김태년·정일영·진성준·안도걸·신영대·정태호·김은혜·김상훈·박지혜·박성민·최은석·윤영석 의원안)

[표 29]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김태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공제대상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공제내용		제품생산비용의 15%	제품생산비용의 20%	판매가의 10%	판매가의 10%
공제한도		법인세의 10%	법인세의 20%	법인세의 20%	법인세의 10%
미공제금액에 대한 처리		10년간 이월공제	10년간 이월공제, 환급 및 환급액 제3자 양도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공제세액의 최대 50% 환급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공제세액의 최대 50% 환급 허용
적용기한		2035.12.31.	2035.12.31.	2035.12.31.	2035.12.31.
구분	신영대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공제내용	제품생산비용의 15%	제품생산비용의 10%	제품생산비용의 10%	제품생산비용의 15~25%	
공제한도	법인세의 20%	법인세의 30%	법인세의 10%	법인세의 25%	
미공제금액에 대한 처리	10년간 이월공제, 환급 및 환급액 제3자 양도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공제세액의 최대 50% 환급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20년간 이월공제, 환급 및 환급액 제3자 양도 허용	
적용기한	2035.12.31.	2035.12.31.	2028.12.31.	2035.12.31.	
구분	박지혜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개 정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미반영)
공제내용	품목별로 상이 (시행령 위임)	제품생산비용의 30% 이내	시행령 위임	10% (수도권외 20%)	
공제한도	법인세의 40%	법인세의 30%	법인세의 20%	법인세의 10%	
미공제금액에 대한 처리	10년간 이월공제	10년간 이월공제	10년간 이월공제	10년간 이월공제	
적용기한	2035.12.31.	2035.12.31.	2035.12.31.	2030.12.31.	

○ 주요 심사 의견

- 전략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국가전략기술 등 공제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R&D, 시설투자 등에 우대공제가 존재하는 만큼 산업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대립
- 또한, 미공제 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특례 등에 대해서도 결손 등으로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대립

[표 30]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등 전략산업의 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업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세제지원을 하여 전주기적 세제지원을 마련할 수 있음 - 미공제 금액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특례를 신설하여 결손 등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음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이미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일반 기술 대비 우대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규모 및 업종별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3자 양도 허용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과세하는 취지의 최저한세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음

○ 결론

- 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 검토 후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관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

○ 관련 안건

-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피상속자의 재산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과세방식(유산세)에서 상속자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세방식(유산취득세)으로 전환(정부안)

[표 31]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과세방식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미반영)
인적공제액	(배우자 공제 이외의 공제) ①, ② 중 택일 ①일괄공제 5억원 ②기초공제 2억원 + 다음의 합계액 ※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공제) 5~30억원 (최저한도) 배우자가 있는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면세	(배우자 외) 상속인 등 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①기본공제: 상속인 2~5억원 수유자 1~5천만원 ②추가공제: 다음의 합계액 ※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10~30억원 (인적공제 합계액 최저한도 신설) 10억원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수유자가 전체 상속세를 연대납세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제3자 증여 합산 여부	합산	비합산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없음	우회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경우 추가과세하는 특례 신설	

○ 주요 심사 의견

-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제출된 정부안에 따라 전환할 경우 세수의 감소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이 모두 제기
- 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방식 전환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

[표 32]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상속인 개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공제제도의 설계가 가능함에 따라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개선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부안에서 규정한 인적공제 등에 따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시 세수가 감소함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 - 정부안에 따르면, 피상속인 생전에 제3자 사전증여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합산이 배제됨에 따라 이를 통한 과세회피도 우려

○ 결론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관련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논의 하기로 함

4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가.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15건의 개정사항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정됨
 - 「소득세법」 1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관세법」 1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국세징수법」 3건

[표 33]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소득세법」 (1건)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을 포함하면서 2단계 누진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을 적용하려던 정부안을 과세대상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외주식을 추가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 주식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제118조의9~제118조의18)
「조세 특례제한법」 (8건)	<p>[소득세 분야 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외에 해제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제77조의3제1항)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전환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으로 축소(제88조의5, 제89조의3)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은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27) <p>[법인세 분야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를 연구개발우수인력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제12조의2) <p>[소비세 분야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방 자기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화석연료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제106조의2, 제111조 등)
「관세법」 (1건)	- 마약류·유해물품 등 휴대·은닉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신설하는 정부안은 마약류 외에도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마약류 등의 휴대·은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도록 수정(제265조)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종합부동산세법」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위임될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제7조) -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이 추정되는 대상 주택의 범위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위임될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제17조)
「국세징수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실태조사 명칭을 실태확인으로 변경하고, 실태확인 범위를 구체화하고 및 직무상 취득 정보누설 금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제10조의2)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제103조) -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면제사유를 신설하려던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15조)

나.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19건
 - 「부가가치세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3건, 「개별소비세법」 1건, 「관세법」 3건

[표 34]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법률명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부가가치세법」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1%p 인상(최은석 의원안, 제60조)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최은석 의원안,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13건)	<p>[소득세 분야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배제 요건에 상속 및 증여 포함(차규근 의원안, 제38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이종욱·안도걸 의원안, 제71조의2)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윤재욱·윤준병·윤영석·추경호·안도걸 의원안, 제98조의9)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 신설(정태호 의원안, 제91조의25) <p>[법인세 분야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가(김상훈·박수영 의원안, 제8조의3)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확대(최은석 의원안, 제85조의6)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소영 의원안,

법률명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p>제104조의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도걸·박정하 의원안, 제121조의33) <p>[소비세 분야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추가(강선우 의원안, 제106조) - 저도수 특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근거 신설(안도걸·박수영 의원안, 제115조의2) <p>[기타 분야 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정태호 의원안, 제99조의15) -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등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정성호 의원안, 제142조)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화(김영환·정성호 의원안, 제142조의3)
「개별소비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김영환 의원안, 제1조)
「관세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 및 감면을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박수영·정태호 의원안, 제89조) - 관세 면제 대상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추가(강선우·정태호 의원안, 제91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면제(윤영석·이연희 의원안, 제93조)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동안 37조 5,104억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7)

[표 3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누적법	31,237	82,023	83,890	87,991	89,963	375,104
소득세	-188	-6,534	-7,295	-6,935	-6,656	-27,609
법인세	6,587	44,354	44,361	44,369	44,400	184,071
부가가치세	1,757	2,728	3,094	3,463	3,532	14,573
상속세·증여세	32	64	64	64	64	288
증권거래세	21,921	24,844	25,938	27,052	28,213	127,967
기타	1,129	16,568	17,728	19,978	20,411	75,813
순액법	31,237	50,786	1,866	4,101	1,972	89,963
소득세	-188	-6,346	-761	360	279	-6,656
법인세	6,587	37,767	7	8	31	44,400
부가가치세	1,757	971	366	369	69	3,532
상속세·증여세	32	32	0	0	0	64
증권거래세	21,921	2,923	1,094	1,115	1,160	28,213
기타	1,129	15,439	1,160	2,251	433	20,411

- 주: 1. 누적법은 2025년(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방식이며, 순액법은 직전년도 대비 세수효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 향후 5년(2026~2030년)간 개정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대한 세율 1%p 인상: +18조 4,820억원
 -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상: +12조 7,967억원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의 교육세율 0.5%p 인상: +6조 5,513억원

7)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확정된 2026년 총수입 예산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이후 서술되는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5년) 대비 변동하는 세수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함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 추가 및 2년간 경감세율 적용: +1조 2,885억원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을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축소: +1조 155억원
-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1조 9,206억원

[표 36]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개정세법 주요 항목	2026~2030 연평균 ¹⁾	2026~2030 누적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	36,964	184,820
(증권거래세)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인상	16,378	127,967
(교육세)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16,378	65,513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및 2년간 경감세율 적용	2,577	12,885
(소득세)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	2,539	10,155
(소득세)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4,802	-19,206

주: 1) 세수효과가 발생한 연도만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년간 37조 8,040억원⁸⁾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회 수정사항에 따라 세수증가 규모가 2,93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
-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 내역
 - 소득세(5년간 -1조 1,334억원)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기·세율 등 조정: -9,031억원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대상 조정: -2,262억원
 - 국외주식 국외전출세 적용세율 인하 조정: -41억원
 - 법인세(5년간 -4,068억원)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4,000억원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68억원

8)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대주주 기준 변경 항목은 제외)에 따라 5년간 누적 34조 4,06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5년간 +1조 3,455억원)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및 2년간 경감세율 적용: +1조 2,885억원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570억원
- 기타(5년간 -989억원)
 -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1,170억원 등

[표 37]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소득세	-135	-4,197	-2,334	-2,334	-2,334	-11,334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기 및 세율 등 조정	-	-3,763	-1,756	-1,756	-1,756	-9,031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135	-424	-568	-568	-568	-2,262
- 국외주식 국외전출세 적용세율 인하 조정	-	-10	-10	-10	-10	-41
법인세	-	-1,017	-1,017	-1,017	-1,017	-4,068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1,000	-1,000	-1,000	-1,000	-4,000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17	-17	-17	-17	-68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1,034	1,954	2,875	3,796	3,796	13,455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및 2년간 경감세율 적용	920	1,840	2,761	3,682	3,682	12,885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114	114	114	114	114	570
기타	-174	-440	-698	278	45	-989
합 계	725	-3,700	-1,174	723	490	-2,936

주: 1. 일몰이 존재하는 항목의 경우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2025년 세법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제도 상존
 - 각 논의 과제별 상세내용은 IV장 참조
- **(내항선 및 연근해어업 선원의 월급여액 비과세 소득 확대 관련)** 내항선 및 연근해어업 선원의 비과세 소득 한도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내항해운 산업발전 방안,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내항해운 산업발전,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및 기준의 적정성 관련)**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합계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효과와 지급 요건·기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 효과, 지급 요건·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관련)**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을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지정 시 최근의 분양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근의 분양가 상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의 효과성 관련)**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관련)**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및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 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 관련)**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화석연료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기한 연장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관련)** 다수의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는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괄

- 소득세 분야는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 및 벤처투자를 지원하고,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농·임·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자녀양육 가구 지원을 위해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 농·임·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임목·별채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농·임·어업인 조합원 등의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 및 벤처투자 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하되, 4단계 누진세율(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을 적용하는 제도 신설
 - * 2024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며, ① 또는 ② 충족 기업 (① 배당성향이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며, 전년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자녀 양육가구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 지급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현행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폐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을 상향 조정하며,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이 외에도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기준 완화 등이 개정

□ 농·임·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농·임·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임목·벌채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농·임·어업인 조합원 등의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2026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지원 대상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저축지원 등 기타

-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만 19~34세의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의 청년이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3년간 가입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지원 신설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거주자 등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되, 과세특례 대상을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수급자로 축소
- 이 외에 사적연금 연금수령시 종신형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 주식 등을 추가

나. 주요 논의사항

(1)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내국인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례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의 누진세율(14~30%)로 분리과세

* 요건 ① 또는 ② 를 충족하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
(단, 현금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① 배당성장 40% 이상

② 배당성장 25% 이상 +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 개정 취지: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20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신설

□ 세수효과

- (2027년) -4,802억원* (연평균) -4,392억원 (2027~2030년) -1조 7,568억원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세율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이에 대해 고소득·고자산가에 배당소득이 집중된 상황에서 조세형평성 저해 가능성 및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대상기업 요건', '세율', '적용시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대상기업 요건) 기업의 추가적인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본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논의 결과 고배당기업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요건을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 배당 증가로 변경하기로 함
- (세율) 정부안의 최고세율(35%)은 현행 소득세 실효세율 대비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배당 확대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25%)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3~50억원 구간의 세율을 25%, 5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수정하기로 함
 - (적용시기) 2026년 사업연도 귀속분 배당소득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배당증가 요건 충족을 위해 2025년 결산배당(2026년 지급분)을 축소시킬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2026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수정하기로 함
 - 여·야간 합의에 따라 2026년 배당지급분부터 특례를 적용하고 특례배당소득 3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당초 정부안(35%) 대비 낮은 25~3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

[표 38]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박수영 의원안 ¹⁾	안도걸 의원안 ¹⁾	유상범 의원안 ¹⁾	윤영석 의원안 ²⁾				
분리과세 대상기업	(신설)	주권상장법인* 중 ①+② ①밸류업 공시 ②주주환원액**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배당 및 자사주소각액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40% 이상 ②배당성향 20%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10% 이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 배당소득 중 50%만 분리과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30% 이상 ②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 지분율 10% 이상 대주주는 특례에서 제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40% 이상 ②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포함				
세율	(신설)	구분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원천징수세율	9%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14%
		종합과세자	25%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20%	3억원 초과	35%
적용기한	(신설)	2026~2028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2028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2028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구분	이소영 의원안 ²⁾	김현정 의원안 ²⁾	박성훈 의원안 ²⁾	박수민 의원안 ²⁾	임이자 의원안 ²⁾				
분리과세 대상기업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35%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or ③	주권상장법인* *투자회사 등 제외	주권상장법인* *투자회사 등 제외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이상 *투자회사 등 제외	①배당성향 35%이상 ②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또는 직전년도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투자회사 등 제외	①배당성향 35%이상 ②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또는 직전년도 대비 3% 이상 배당증가 ③당기순이익 0 이하 *투자회사 등 제외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3억원 초과	25%	3억원 초과	25%	3억원 초과	25%
적용기한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구분	최은석 의원안²⁾		차규근 의원안¹⁾		정부안¹⁾		개정¹⁾	
분리과세 대상기업	주권상장법인* *투자회사 등 제외,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 펀드 포함		주권상장법인 중 ①+② ①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②소액주주* 배당금이 최대주주 등 대비 1.5배 이상 * 지분을 1% 미만 + 액면가 3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40% 이상 ②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단, 직전년도 대비 배당소득 비(非)감소 *투자회사 등 제외		주권상장법인* 중 ① or ② ①배당성향 40% 이상 ②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증가 (단, 2024년도 대비 배당소득 비(非)감소 *투자회사 등 제외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천만원 초과	27%	3억원 초과	35%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적용기한	2026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2026년 지급분~ 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출·발의·개정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

(2)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
- 개정 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03년 초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연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2007년 공제대상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추가
- 2008년 공제대상에 학교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 수강료 등 공납금이 추가
- 2009년 교육비 공제한도를 연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2014년부터 교육비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 세수효과

- (2027년) -838억원* (연평균) -745억원 (2027~2030년) -2,979억원
-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 취지에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예체능 학원에서의 초등 저학년생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출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병합 심사가 이루어짐
-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과 함께, 사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로 인한 사교육 조장 및 공교육 위축 가능성, 예체능 학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일부 반대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동 제도의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정부안으로 의결됨

[표 39]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조정훈 의원안	박정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대상범위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 취학전 아동 어린이 집·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시설
대상금액	-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고등학생 이하의 경우 교육비 지출액의 160%)	(현행)	(현행)
1인당 공제한도	- 대학생 900만원 (대학원생 제외) -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	- (현행) - (현행)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400만원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
구분	안도걸 의원안	박수민 의원안	서영교 ¹⁾ ·정일영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대상범위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중·고등학생 학원
대상금액	(현행)	(현행)	(현행)	(현행)
1인당 공제한도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400만원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
구분	임광현 의원안	강승규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대상범위	- (현행) - (현행) - 초·중학생 예능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취학전 아동 아이돌봄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취학전 아동 예능학원,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대상금액	(현행)	(현행)	(현행)	(현행)
1인당 공제한도	- (현행) - (현행)	- (현행) - 중·고등학생 300만원 - 초등학생 이하 500만원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
구분	이용선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강대식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대상범위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초·중·고등학생 학원
대상금액	(현행)	(현행)	(현행)	(현행)
1인당 공제한도	- 대학생 1,000만원 (대학원생 제외) - (현행)	- 대학생 1,000만원 (대학원생 제외) -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만	- 대학생 1,500만원 (대학원생 제외) - (현행)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600만원
구분	김태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우재준 의원안
대상범위	- (현행) - (현행)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대상금액	(현행)	(현행)	-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무제한) 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현행)
1인당 공제한도	- (현행) - 고등학생 이하 400만원 ※ 공제율 10%p 인상	- (현행) - (현행) ※ 공제율 자녀수별 차등인상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구분	서영교 의원안 ²⁾	정부안	개정
대상범위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
대상금액	-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 이·소득 무제한)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 이·소득 무제한)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무제한)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1인당 공제한도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주: 1) 의안번호 2200196
2) 의안번호 2212876

(3)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적용기한 연장 및 자녀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 개정취지: 자녀 양육부담 완화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1999년 도입 이후 10회 일몰 연장
-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3년 대중교통 이용유도 목적으로 대중교통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4년 소비심리 개선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추가(16.6. 사용분까지 적용)
- 2017년 문화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공연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8년 문화생활 지원 목적의 공제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2019년 문화생활 지원 목적 공제대상에 신문구독료 추가
-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 2020년 3월 사용액에 대해 항목별 공제율(15~40%) 두 배로 상향, 4~7월 사용액에 대해 항목별 소득공제율 일괄 80%를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0~300만원 대비 30만원 상향한 230~330만원 적용
 - 2021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추가 적용하고 100만원의 추가공제한도 부여
- 2022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 추가, 공제한도 통합, 전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기본공제 한도(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를 250만원으로 통합
 - 각각 100만원씩 구분되어 있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추가공제한도를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통합
 -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한시 상향조정
 -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 추가공제 적용
- 2023년 및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등
 - 2023년(4~12월) 전통시장 및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율 50%, 2023년(1~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로 한시 상향조정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공제(100만원 한도) 적용

□ 세수효과

- (2027년) -4조 8,223억원* (연평균) -5조 1,046억원 (2027~2029년) -15조 3,137억원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자녀 수에 비례한 공제 한도 추가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되어 심사됨
- 심사 과정에서 '적용기한 연장'과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

가 이루어짐

- (적용기한 연장) 여·야 모두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크고, 과표 양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점에서 추후 단계적 축소방안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
 -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확대) 인구절벽 상황에서 출산·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3자녀 가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세수감소 규모가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견에 따라 정부안대로 의결
- 여·야간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자녀 수에 따른 감면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안으로 의결

[표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양부남 의원안	박용갑 의원안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2028.12.31.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체육: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전통시장 등*: 50% * 전통시장 사용분 및 소상공인(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으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	- 전통시장 등*: 50% * 전통시장 사용분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액	총급여액	(현행)
	공제한도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5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400만원	
구분	한정애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적용기한	2028.12.31.	2028.12.31.	2028.12.31.
소득 공제율	- (현행) - 자녀수별 추가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분의 5%/10%/20%(1명/2명/3명 이상)	- (현행) - 자녀수별 추가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분의 10%/20%/25%(1명/2명/3명 이상)	(현행)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 300만원(250만원) + 50/100/200만원(자녀1명/2명/3명 이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 300만원(250만원) + 50/100/150만원(자녀1명/2명/3명 이상)	-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구분	이종배·최은석 의원안	정부안	개정
적용기한	2028.12.31. (이종배 의원안) 2030.12.31. (최은석 의원안)	2028.12.31.	2028.12.31.
소득 공제율	- 전통시장: 50%	(현행)	(현행)
기본공제 한도	(현행)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1명 350만원, 자녀2명 이상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자녀2명 이상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1명 350만원, 자녀2명 이상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1명 275만원, 자녀2명 이상 300만원

(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저소득* 조합원·회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비과세, 2029년 5%, 2030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근로소득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이외의 경우 2026년 5%, 2027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개정 취지: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도입 당시 100만원에서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
 - 1995년 일몰제 도입 이후 2~3년 단위 지속 연장
-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도입 당시 200만원에서 1987년 500만원, 1992년 1,000만원, 2023년 2,0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
 - 1995년 일몰제가 도입되었다가 2001년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으나 2007년 일몰제 재도입 후 2~3년 단위 지속 연장

□ 세수효과

- (2026년) 185억원 (연평균) 913억원 (2026~2030년) 4,563억원
 - 상호금융 예탁·출자금 비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부분에 대한 세수효과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서민층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되어 심사됨
-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대형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탈 가능성, 상호금융기관의 최근 재무건전성 악화 및 사회적 금융 기능 등에 근거한 반대의견이 제기됨
- 여·야가 비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기준을 당초 정부안의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합의함에 따라 비과세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됨

[표 41]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서영교 의원안	주철현·김영진·이양수 이병진·송옥주·추경호 최은석 의원안	박성훈·김선교 의원안
대상	- 조합 예탁·출자금 이자·배당소득	(현행)	(현행)	(현행)
기간	- 2025년까지 비과세 - 2026년 5%, 2027 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27년까지 비과세 - 2028년 5%, 2029 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28년까지 비과세 - 2029년 5%, 2030 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29년까지 비과세 - 2030년 5%, 2031 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구분	서삼석·박희승·박상웅 임호선·정희용 의원안	서천호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대상	(현행)	(현행)	(현행)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기간	- 2030년까지 비과세 - 2031년 5%, 2032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31년까지 비과세 - 2032년 5%, 2033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35년까지 비과세 - 2036년 5%, 2037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구분	김주영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	임요경·윤준병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대상	-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	-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	-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	-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
기간	- 2027년까지 비과세 - 2028년 5%, 2029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28년까지 비과세 - 2029년 5%, 2030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30년까지 비과세 - 2031년 5%, 2032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28년까지 비과세 - 2029년 5%, 2030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예탁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 상향
구분	임요경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대상	-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기간	- 2030년까지 비과세 - 2031년 5%, 2032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 2032년까지 비과세 - 2033년 5%, 2034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구분	정부안		개정	
대상	(현행)		(현행)	
기간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저소득* 조합원·회원의 경우 2028년까지 비과세, 2029년 5%, 2030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저소득* 조합원·회원의 경우 2028년까지 비과세, 2029년 5%, 2030년부터 9% 등 저율 분리과세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개인지방소득세 포함시 16.5%에서 44.0%)로 상향 조정
 - (현행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개정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
- 개정 취지: 지역성장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시행
- 2024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를 도입
-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 세수효과

- (2027년) -293억원* (연평균) -293억원 (2027~2030년) -1,172억원
-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기부금액 구간별 혹은 기부지역 대상별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 심사되었음
-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하였으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추가적인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 논의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며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가적인 세제지원 확대는 성급하며, 민간의 지방재정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는 취지인데 정부 재정으로 전액 지원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
- 다만, 전액 세액공제의 상한인 10만원에 대부분의 기부가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지방정부의 기부금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부안으로 의결

[표 4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태호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의 15%(단, 특별재난지역은 30%)	(세액공제율) -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해당 구간의 15% - 1천만원 초과: 초과분의 30%(단, 특별재난지역은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30%)	(세액공제율) - 5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5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해당 구간의 15% - 1천만원 초과: 초과분의 30%(단, 특별재난지역은 5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30%)
구분	복기왕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¹⁾	이만희 의원안 ²⁾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 5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해당 구간의 20% - 5백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의 15%	(인구감소지역 대상 세액공제율 인상) -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의 15%	(특별재난지역 대상 세액공제율 인상) -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의 30%
구분	이만희 의원안 ³⁾	정부안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	(농어촌구조전환우선지역 대상 세액공제율 인상) -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의 15%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해당 구간의 40%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의 15% (단, 특별재난지역은 30%)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해당 구간의 40%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의 15% (단, 특별재난지역은 30%)

주: 1) 의안번호 3429
 2) 의안번호 9971
 3) 의안번호 8222

[표 43]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자녀양육 가구 지원</p> <p>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p>	<p>(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p>(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0만원 	<p>(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신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p>(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p>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p>	<p>(비과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p>(비과세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만원 	<p>(비과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p>(비과세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p>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p>	<p>(교육비 세액공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p>(교육비 세액공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신설)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과세기간 종료일 시점 기준)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p>교육비 세액공제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p>	<p>(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장애인(나이 및 소득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시 18세 미만 한정 - 직계비속 등(나이요건 없으나, 소득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p>(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확대) 직계 비속 등에 대한 소득요건 폐지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95조의2)	<p>(공제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근로자 <p>(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p>(공제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소득요건* 및 거주요건 ** 총족 시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적용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를 달리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p>(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제126조의 2)	<p>(적용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2.31. <p>(기본공제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250만원 	<p>(적용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12.31. <p>(기본공제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조정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조정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 및 벤처투자지원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제104조의27)	(신설)	<p>(고배당기업 요건) ① or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배당성향 40% 이상 -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p>*단, '24 사업연도 대비 배당 미감소</p> <p>(분리과세 세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특례 배당 소득</th> <th>2천만원 이하</th> <th>2천만원 ~3억원</th> <th>3억원~50억원</th> <th>5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세율</td> <td>14%</td> <td>20%</td> <td>25%</td> <td>30%</td> </tr> </tbody> </table> <p>(적용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1.1. 이후 지급 배당분부터 2028.12.31.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특례 배당 소득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3억원	3억원~50억원	50억원 초과	세율	14%	20%	25%	30%
특례 배당 소득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3억원	3억원~50억원	50억원 초과								
세율	14%	20%	25%	30%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4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제14조 제2항)	(신설)	(특례 대상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내용) -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 - 2028.12.3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 16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농·임·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 12조제2호마목)	(대상) -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한도) - 연 600만원	(대상) - (현행) (한도) - 연 3,000만원
농업법인에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 전환(조특법 제66조·제 68조)	(내용)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사후관리) -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내용) - 이월과세* 적용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사후관리) -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적용시기) - 2026.1.1. 이후 현물출자 분부터 적용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69조의2)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제69조의3)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87조의2)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농어민이 사망한 때 - 농어민이 해외이주한 때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밖의 사유 (적용기한) - 2025.12.31.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현행) -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적용기한) - 2028.12.3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연장 및 정비(조특법 제88조의5·제89조의3)	(과세특례) - 소득발생기간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소득 발생 기간</td> <td>'25.12.31.까지</td> <td>'26.1.1.~'26.12.31</td> <td>'27.1.1.부터</td> </tr> <tr> <td>감면 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able>	소득 발생 기간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과세특례) - 상품가입일 기준 ① 농·임·어업인 조합원,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가입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가입일</td> <td>'28.12.31.까지</td> <td>'29.1.1.~'29.12.31</td> <td>'30.1.1.부터</td> </tr> <tr> <td>감면 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able> ②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가입자(농·임·어업인 조합원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가입일</td> <td>'25.12.31.까지</td> <td>'26.1.1.~'26.12.31</td> <td>'27.1.1.부터</td> </tr> <tr> <td>감면 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able>	가입일	'28.12.31.까지	'29.1.1.~'29.12.31	'30.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 발생 기간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8.12.31.까지	'29.1.1.~'29.12.31	'30.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58조)	(세액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기부금액</td> <td>공제율</td> </tr> <tr> <td>~10만원</td> <td>100/110</td> </tr> <tr> <td>10만원~2000만원</td> <td>15/100</td> </tr> </table>	기부금액	공제율	~10만원	100/110	10만원~2000만원	15/100	(세액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기부금액</td> <td>공제율</td> </tr> <tr> <td>~10만원</td> <td>100/110</td> </tr> <tr> <td>10만원~20만원</td> <td>40/100</td> </tr> <tr> <td>20만원~2,000만원</td> <td>15/100</td> </tr> </table>	기부금액	공제율	~10만원	100/110	10만원~20만원	40/100	20만원~2,000만원	15/100										
기부금액	공제율																									
~10만원	100/110																									
10만원~2000만원	15/100																									
기부금액	공제율																									
~10만원	100/110																									
10만원~20만원	40/100																									
20만원~2,000만원	15/100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 확대(조특법 제71조의2)	(과세특례) - 1주택자가 아래 대상 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과세특례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과세특례) - (현행) (과세특례 대상지역) - (현행)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8조의9)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9조의4)	(특례 제외지역) - 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적용기한) - 2025.12.31.	(특례 제외지역) - 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에 있는 경우 (적용기한) - 2028.12.31.
저축관련 조세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7조제2항)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 해외 이주 (적용기한) - 2025.12.31.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현행)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적용기한) - 2028.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7조제3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연장 및 대상 정비(조특법 제88조의2)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65세 이상 거주자 (적용기한) - 2025.12.31.	(대상자) - (현행) -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적용기한) - 2028.12.3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	(편입대상) - 집합투자증권	(편입대상 명확화) - 집합투자증권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역외펀드) 제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조특법 제91조의22)	(미추징 사유) -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사유 추가) - (현행)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1조의25)	(신설)	(가입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9~34세 청년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요건 충족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요건 충족 (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 연 600만원 (적용기한) - 2028.12.31.
양도소득세 지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세법 제96조제3항)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현행) - (신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증여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현행) - (신설)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외주식 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주식거래내역 제출 자료) -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 파생상품 등 거래내역,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등 거래내역	(파생상품, 주식거래내역 제출 자료) - (현행) - (신설) 국외주식 거래내역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토지 매수대상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조특법 제77조의3)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7조의9)	(신설)	(대상)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내용) -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현물출자 기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기한) - 2028.12.31.
국제조세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세법 제57조의2제2항·제3항)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합계액(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C: 종합소득금액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 - 공제금액: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삭제) - (삭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제2항, 제129조제5항·제6항·제7항)	<p>(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금액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p>(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 	<p>(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신설) 공제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퇴직소득 <p>(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신설) 공제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이자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규정(소득세법 제117조의2제2항, 제189조의2)	(신설)	<p>(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방식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18조의18)	<p>(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전출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 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한계가 5년이 상 &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p>(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양도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등 <p>(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3억원 이하분 20% - 과표 3억원 초과분 25% 	<p>(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추가) 국외주식 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p>(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양도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추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외주식 등 <p>(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 그 밖의 주식 등 20%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56조의6)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 (현행) - (신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 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세무행정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과세관할 명확화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2항)	(불성실 가산세 과세관할)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	(불성실 가산세 과세관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9196호 소득법 제81조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세법 제75조의7·부칙)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용근로소득: 매월 (시행시기) - 2026.1.1. 이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현행) (시행시기) - 2027.1.1. 이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조의5·부칙)	(적용시기) - 2026.1.1. ~ 2027.12.31	(적용시기) - 2027.1.1. ~ 2028.12.3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대상 및 방법 (소득세법 제144의2제2항)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대상 및 방법) - 대상 및 방법: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대상 및 방법) - 대상 및 방법: (현행) - (대상 추가) 사업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제162조의3제3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산발행 요건)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산발행 요건) - 대상 추가: 여행업 등(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방법 추가: 전자적기업자원 관리설비 운용 등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기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제5호의3)	(사적연금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종신수령시 세율: 4%(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연금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사적연금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 (현행) - 종신수령시 세율: 3%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연금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 10년 이하: 현행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8조의3)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공모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27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조특법 제117조)	(적용시장) - 증권시장(KOSPI, KOSDAQ), 파생상품시장	(적용시장) - (현행) - (추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 개설 증권시장*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6조의3제2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우리사주조합 조세특례 제한범위 명확화(조특법 제129조의2)	(제한범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4) 전체 적용배제	(제한범위 명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로 한정(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제10항)하여 적용배제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괄

- 법인세 분야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배당증대, 전략산업 지원, 지역균형 발전 목적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 인상 및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상위 구간 세율 인상
 - 자본시장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한편,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대한 특례 신설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및 법인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
-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체계 합리화
 -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기존 9~24%에서 10~25%로 1%p 인상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기존 19~24%에서 20~25%로 1%p 인상
 -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12%에서 15%로 3%p 인상
- 자본시장 및 벤처투자 활성화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의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출자분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 미래전략산업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5%에서 10%로 5%p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기업규모별로 10~15%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
-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

□ 지역균형발전 촉진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지역에 따라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투자 및 고용 규모에 비례하도록 세액감면 한도를 설정하며,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되는 추징규정을 신설
- 위기지역, 농공단지 등 지방 경제산업 관련 15개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정비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공제금액 점증구조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되는 사후 추징규정 정비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나. 주요 논의사항

(1) 법인세율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 1%p 인상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9~24%인 세율을 10~25%로 1%p 인상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19~24%에서 20~25%로 1%p 인상
- 개정 취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법인세율은 2010년 이전 과세표준 2단계 구간을 유지하면서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및 2017년 개정으로 과세표준 200억원 및 3,000억원 전후로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한 후, 2022년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p 인하
- 또한, 2024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19%의 세율을 적용

[표 44] 법인세율 개정연혁: 일반법인 기준

개정연도	2004	2008	2009	2011	2017	2022
1억원 이하	13%	2008~2009년: 11%	10%	10%	10%	9%
1~2억원	25%	2010년: 10%		20%	20%	19%
2~200억원		2008년: 25% 2009년: 22%	2010~2011년: 22%	22%	22%	21%
200~3,000억원					2010년 이후: 20%	22%
3,000억원 초과						

□ 세수효과

- (2026년) 7,136억원* (연평균) 3조 6,964억원 (2026~2030년) 18조 4,820억원
* 자기계산 중간예납을 통해 확정신고 이전에 납부하는 세수효과 추정치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의 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법인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정부안의 세율인상 내용을 중심으로 조세소위 기간동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세율인상 찬성) 세율인상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우선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세법개정으로 세율을 인하한 후 투자 증진 등에 기대했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세율인상으로 우려되는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주장
 - ※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과 같이 과세표준 전 구간이 아닌 상위 과세표준 구간에 한정하여 세율을 인상할 것을 주장

- (세율인상 반대) 반면, 세율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과 국제경쟁력 약화, 국내투자 유입의 유인 감소 등으로 장기적인 기업 수익 악화와 세입기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정권교체 시기마다 세율을 자주 변동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조세소위 기간 중에 찬성과 반대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정부안으로 의결됨

[표 45] 법인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일반법인 적용세율 기준

(단위: %)

과세표준	현행	김미애 의원안	김기표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개정
2억원 이하	9	10	9	9	8	9	10	10	10
2~5억원	19		19	19	18	20	20	20	20
5~200억원		21	20	21	22	20	22	22	22
200~3,000억원	24			22	25		25	25	25
3,000억원 초과									

(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소득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환류대상을 현행 투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 결제액에서 배당 추가
 - 환류해야 하는 소득을 현행 투자포함시 기업소득의 60~80%, 투자제외시 10~20%에서 각각 투자포함시 65~85%, 투자제외시 20~40%로 상향 조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개정 취지: 기업의 배당 촉진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 및 임금증가 등 이익의 환류를 유인하기 위하여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명칭으로 도입

- 2017년부터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환류대상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는 등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이후 환류해야 하는 소득 기준 상향, 적용대상 축소 등의 제도 변경

[표 4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주요 연혁

개정연도	내용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 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중소기업 제외) - 환류해야 하는 소득: ①과 ② 중 택일 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80%, ②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30% -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분, 배당액 등 - 적용세율: 10%
2017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편 - 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중소기업 제외) - 환류해야 하는 소득: ①과 ② 중 택일 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65%, ②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15% -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 지출액 등 - 적용세율: 20%
2021년	환류해야 하는 소득(투자포함형) 상향 조정* - 기업소득 × 65%, → 기업소득 × 70%, * 시행령 개정 사항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1년 → 2년
2022년	적용대상 축소 - 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세수효과

- (2027년) 2,771억원* (연평균) 2,799억원 (2027~2029년) 8,396억원
 * 해당 세수효과는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만 반영하고 있으며, 환류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세수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환류해야 하는 소득의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관련한 3건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개정안은 주로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의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소득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려는 정부안의 취지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
 - 한편,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을 내국인에 대한 배당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외국인 주주구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기업 이익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찬성의견과 현실적으로 수혜자 국적 등에 따른 차등 배당이 어려우며 주주구성에 따라 과세제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여·야간 합의에 따라, 환류대상에 수혜자 국적에 관계없이 배당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대로 의결됨

[표 47]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단위: %)

구 분	현행	이만희 의원안	김정호 의원안	박수민 의원안	정부안	개정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현행)	(현행)	배당 추가 *내국인에 대한 배당 한정	배당 추가	배당 추가
환류해야 하는소득	투자포함형: 60~80% 투자제외형: 10~20%	(현행)	(현행)	(현행)	투자포함형: 65~85% 투자제외형: 20~40%	투자포함형: 65~85% 투자제외형: 20~40%
적용기한	2025.12.31.	2030.12.31.	2028.12.31.		2028.12.31.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 5%p 인상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 (현행) 5% → (개정) 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개정 취지: 영상 및 웹툰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6년 신설된 후, 공제대상과 제작비 범위, 공제율 등이 점진적으로 확대
 - 2019년 공제대상에 '오락프로그램' 추가
 - 2021년 국외에서 발생한 제작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 2022년 공제대상 콘텐츠를 'OTT* 영상물'까지 확대
 - * OTT: 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2023년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2~5%p 인상 및 추가공제율(10~15%) 신설

[표 4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주요 연혁

개정연도	내용
2016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2019년	공제대상에 '오락프로그램' 추가
2021년	공제대상에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포함 - 공제대상: 국내 발생 제작비용 → 국내·외 발생 제작비용
2022년	공제대상에 'OTT 영상물' 추가
2023년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 - 기본공제율: 중소기업 10→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 - 추가공제율: 10% (중소기업 15%) 적용 * 추가공제는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시 적용

□ 세수효과

- (2027년) -333억원* (연평균) -333억원 (2027~2029년) -998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영상 및 웹툰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웹툰콘텐츠로의 공제대상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웹툰 외에도 게임, 음악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은 크게 ‘공제대상’, ‘기본공제율’, ‘적용기한’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공제대상 확대) 현행 방송프로그램, 영화, OTT 영상에서 게임물, 음악콘텐츠, 공연, 간행물·전자출판물, 디지털만화·웹툰 등으로 확대하는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게임 등 분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웹툰 및 디지털만화로 확대하는 정부안으로 의결
 - (기본공제율) 대형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투자 증가를 유인할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는 정부안으로 의결
 -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과 발의된 의원안 모두 3년의 적용기한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견없이 의결
- 여·야간 합의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웹툰콘텐츠로의 공제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정부안으로 의결됨

[표 49]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민형배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공제대상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 영화, OTT 영상	(추가) 음악콘텐츠, 게임물, 간행물·전자출판물, 출판만화·디지털만화·웹툰	(추가) 출판물·전자출판물, 디지털만화·웹툰
공제율(%) (대/중견/중소)	5 / 10 / 15	(현행)	10 / 15 / 30
적용기한	2025. 12. 31.	2028. 12. 31.	2028. 12. 31.
구 분	정연욱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조승래·김승수 의원안
공제대상	(추가) 게임콘텐츠	(추가) 게임콘텐츠	(추가) 게임물, 음악콘텐츠·공연
공제율(%) (대/중견/중소)	15 / 20 / 25	(현행)	10 / 10 / 15
적용기한	2028. 12. 31.	2028. 12. 31.	2028. 12. 31.
구 분	정부안		개 정
공제대상	웹툰콘텐츠 추가		웹툰콘텐츠 추가
공제율(%) (대/중견/중소)	10 / 10 / 15		10 / 10 / 15
적용기한	2028.12.31.		202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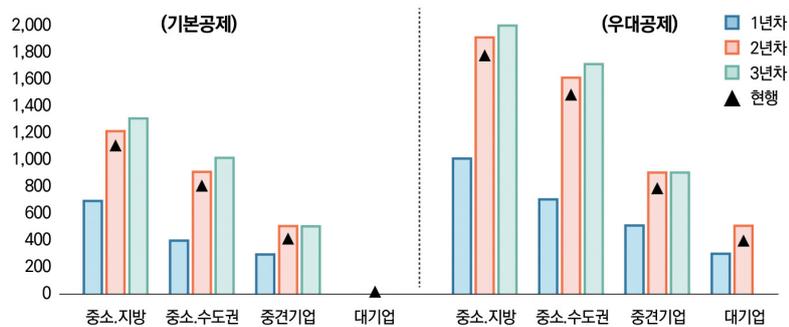
주: 공제율은 기본공제율을 의미

(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장기고용에 따른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사후 추징규정 정비 등
 - 고용기간에 비례한 공제금액 점증구조를 도입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 수를 초과하는 고용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 공제 개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잔여 공제기간 전체 고용증가분에 대한 공제 배제가 아닌 고용감소분에 국한해 공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편

[그림 1] 고용기간에 비례한 공제금액 점증구조 도입



주: 우대근로자는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 단,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개정 취지: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2년 고용 관련 4개의 개별 세액공제조항(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료)을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
- 2023년 정규직 전환 공제의 대상 기간을 1년 연장
- 2025년 우대공제 요건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

[표 50]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주요 연혁

개정연도	내용
2022년	고용 관련 개별 세액공제조항을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 공제 -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공제 - 정규직전환 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2023년	정규직 전환 공제기간을 1년 연장 -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의 전환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
2025년	우대공제 요건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근로자로 변경 - 성별 요건 삭제 및 퇴직 사유로 가족돌봄 추가 - 1년 이상 동일업종 근무요건을 1년 이상 동일기업 근무요건으로 강화

□ 세수효과

- (2027년) -1조 816억원* (연평균) -2조 3,910억원 (2027~2030년) -9조 5,638억원
* 해당 세수효과는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만 반영하고 있으며, 장기고용에 따른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등에 대한 세수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및 사후 추징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인적 특성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은 주로 정부안의 공제액 인상구조와 우대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청년의 높은 실업률 및 이직률을 고려했을 때,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은 상대적으로 신규 채용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유지에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안으로 의결
 - (우대공제 대상 요건 완화) 우대공제 대상 중 특히 고령 근로자의 연령요건을 60세에서 55세로 완화하는 의원안에 대한 논의의 경우, 확대 대상 연령(55~60세)의 고용 및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점을 감안하여 연령요건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 여·야간 합의에 따라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및 사후 추징규정 정비,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정부안으로 의결됨

[표 51]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상구조 도입 및 사후 추징규정 정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윤준병·추경호 의원안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공제액 (만원)	구분	공제액				구분	공제액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	850	950	450	-	기본	850	950	450	-					
우대	1,450	1,550	800	400	우대	1,650	1,750	1,000	600						
구분	정일영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적용기한	2030.12.31.					2027.12.31.									
공제액 (만원)	구분	공제액				구분	공제액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	850	950	450	-	기본	850	950	450	-					
우대	2,900	3,100	1,600	800	우대	1,500	1,650	850	450						
구분	최수진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적용기한	2028.12.31.					2027.12.31.									
공제액 (만원)	구분	공제액				구분	공제액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	935	1,093	450	-	기본	850	1,200	450	600	-				
우대	1,450	1,550	800	400	우대	1,450	1,700	800	1,000	400					
구분	최은석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					김정호·장철민 의원안				
적용기한	2028.12.31.					2027.12.31.					2028.12.31.				
공제액 (만원)	구분	공제액				구분	공제액				구분	공제액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	935	1,093	450	-	기본	935	1,093	450	-	기본	935	1,093	450	-
우대	1,450	1,550	800	400	우대	1,450	1,550	800	400	우대	1,450	1,550	800	400	
비고	우대공제 대상 고령 근로자 연령요건 완화 (60세→55세)					(현행)					(현행)				
구분	박정하·최기상 의원안					정부안 및 개정									
적용기한	2030.12.31.					2028.12.31.									
공제액 (만원)	(현행)	구분	공제액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1년	2년	3년	1년	2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기본	400	900	1,000	700	1,200	1,300	300	500	500	-	-				
우대	700	1,600	1,700	1,000	1,900	2,000	500	900	900	300	500				
비고	사후 추징규정 정비														

(5)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개선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확대,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등
 - 공장 이전 중소기업 및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낙후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확대
 - ※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세액감면 한도를 투자누계 및 지방근무 인원 수에 비례하도록 설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정하는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투자누계액 대비 70%와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의 합산액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개정 취지: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1년 본사이전의 경우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등의 세액감면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신설
 - (동법 시행령)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 10억원 이상,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 20명 이상
- 2022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상향 조정
- 2024년 공장이전 또는 본사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의 10년 이내 중복 감면 제외 규정 신설
- 2025년 공장이전 세액감면의 10년 이내 중복 감면 제외기준을 동일 공장에 대한 감면 이력으로 한정

[표 52] 지방이전 기업 세액지원 제도 주요 연혁

시행연도	내용
2022년	본사이전의 세액감면 요건을 신설 -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등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
2023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상향 -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024년	수도권 내 공장이전의 세액감면 범위 축소와 중복수혜 제외 규정 신설 - 수도권 내 공장이전의 경우 세액감면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축소 - 공장 또는 본사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의 10년 이내 중복 감면 제외 규정
2025년	공장이전 세액감면의 10년 이내 중복 감면 제외 규정을 동일 공장에 대한 감면 이력으로 한정

□ 세수효과

- (2027년) -213억원* (연평균) -453억원 (2027~2030년) -1,813억원
*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기간 확대와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적용기한 연장, 세액감면기간 확대, 사후추징 사유 추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로 수도권 및 연접지역의 감면기간 확대와 사후관리의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수도권 및 연접지역 감면기간 확대) 일부 의원들은 현행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효과가 수도권 및 연접지역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를 우려하였으나, 수도권내 기업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도 낙후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으로 의결
 - (사후관리 도입) 정부안의 지방근무 인원 등에 비례한 세액감면 한도 설정 및 상시근로자 감소시 사후추징 규정 신설 외에도 주주총회·이사회의 본사 미개최,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 수도권 사무소로 근무지 이동시 사후 추징 등 의원안이 함께 논의되었으나, 의원안 내용의 규제 수준이 다소 과도하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으로 의결
- 여·야간 합의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확대와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등을 포함한 정부안으로 의결됨

[표 53] 지방이전 기업 감면기간 확대,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윤영석 의원안	한병도·추경호 의원안
적용기한	2025.12.31.							2027.12.31.	2028.12.31.
감면 기간	지역	감면율	감면기간(년)					(현행)	(현행)
			수도권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 광역시	중규모 도시	그 외		
	낙 후	100%	5	5	7	7	10		
		50%	2	2	3	3	2		
	그 외	100%	-	5	5	5	7		
		50%	-	2	2	2	3		
구분	주진우 의원안							김형동 의원안	
적용기한	2028.12.31.							2029.12.31.	
감면 기간	지역	감면율	감면기간(년)					(현행)	
			수도권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 광역시	중규모 도시	그 외		
	낙 후	100%	5	7	9	9	10		
		50%	2	2	3	3	2		
	그 외	100%	-	7	7	7	7		
		50%	-	2	2	2	3		
비고	본사이전 세액공제 감면개시기한 연장(5년→7년), 사후추징 요건(주주총회·이사회의 본사 미개최, 이전본사 근무인원 25% 이상 수도권 이동)								
구분	윤준병·김정재·권영진· 강명구 의원안		정부안 및 개정						
적용기한	2030.12.31.		2028.12.31.						
감면 기간	지역	감면율	감면기간(년)					(현행)	
			수도권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 광역시	중규모 도시	그 외		
	낙 후	100%	5	5	7	10	10		
		50%	3	3	4	5	5		
	그 외	100%	-	5	5	5	7		
		50%	-	3	3	3	4		
비고			감면한도 신설, 사후 추징규정 정비						

[표 54]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체계 합리화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율) - 일반법인	(법인세율) - 일반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2억원 9	0~2억원 10
	2~200억원 19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1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1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2조)	(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세율) - (현행) - 과표 20억원 초과분: 15%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자본시장 및 벤처 등 투자 활성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 공제 적용 (법인세법 제51조의2)	(공제대상)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공제대상) - (추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공제내용)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 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공제내용) - (현행)
	(중복배제) -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세 및 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 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 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중복배제) - (추가)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 제 적용
벤처투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3조)	(적용대상) - 직접·간접출자 -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적용대상) - (현행) -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	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술사업금융업자,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술사업금융업자
	피출자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피출자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3조의2)	(적용기한) - 2025.12.31.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직접·간접출자분: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적용기한) - 2028.12.31.	(공제대상 및 공제율) - (현행) -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5% - (추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주식등 취득가액의 5%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13조의3)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적용기한) - 2028.12.31. * 단,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기한 종료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제14조제2항)		(신설)	(적용기한) - 2028.12.31.	(특례대상) - 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특례내용) - 특례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4조제4항~제7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5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 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제21조제4항~제6항)	(비과세 대상)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 (추가) 국제결제은행의 이자·배당·유기증권 양도소득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38조의4)	(신설)	(특례대상) - 5년 이상 사업한 외국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회사의 주식·출자지분 등을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법인에 현물출자시 발생한 양도차익 (특례내용) -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 2028.12.31.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97조의9)	(신설)	(특례대상)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 단, 현물출자는 회사설립 신고 이후 5년 이내 (적용기한) - 2028.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0조의32)	(특례명)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60~8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10~20% (환류대상) - 투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 지 출액 (적용기한) - 2025.12.31.	(특례명)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65~85%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20~40% (환류대상) - (추가)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 한 금전배당 (적용기한) - 2028.12.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31)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 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 입 특례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36)	(신설)	(특례대상) - 한국산업은행 (특례내용) -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 산입 (적용기한) - 2028.12.3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 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제121조의26)	(특례내용)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자산양도 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특례내용) - (현행) - (신설) 단,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연구개발 및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한도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12조의2)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 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 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 인력 2,000만원)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5조의6)	(공제율) - (기본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추가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공제율) - (기본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5조의7)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대상) - 중소·중견기업	(적용기한) - 2028.12.31. (적용대상) - (추가) 대기업 포함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제25조의8)	(신설)	(공제대상) -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공제대상 비용) -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 정부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 비용 제외 (공제율) -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특례신설 (조특법 제28조의5)	(신설)	(특례대상)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특례내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적용기한) - 2028.12.31.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편 (조특법 제104조의30)	(기본공제 요건)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기본공제율)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적용기한) - 2025.12.31.	(기본공제 요건) - 전체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물동량이 40% 이상 - (삭제) (기본공제율)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추가공제 요건) - (신설)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추가공제율) -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적용기한) - 2028.12.31.
고용지원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4)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8)	(공제대상) -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공제액)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공제대상) -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공제액)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에 대해 공제 적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기본</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p>* 우대공제: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p> <p>(사후관리) - 공제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p> <p>-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p> <p>(적용기한) - 2025.12.31.</p>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th> <th>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년차 700</td> <td>1,000</td> <td>500</td> <td>300</td> </tr> <tr> <td>대</td> <td>2년차 1,600</td> <td>1,900</td> <td>900</td> <td>500</td> </tr> <tr> <td>* 3년차</td> <td>1,700</td> <td>2,000</td> <td>900</td> <td>-</td> </tr> <tr> <td rowspan="3">기본</td> <td>1년차</td> <td>400</td> <td>700</td> <td>300</td> </tr> <tr> <td>2년차</td> <td>900</td> <td>1,200</td> <td>500</td> </tr> <tr> <td>3년차</td> <td>1,000</td> <td>1,300</td> <td>500</td> </tr> </tbody> </table> <p>* 우대공제: (현행)</p> <p>(사후관리) -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 전환</p> <p>- (삭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p> <p>(적용기한) - 2028.12.31.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포함</p>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대	2년차 1,600	1,900	900	500	*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대	2년차 1,600	1,900	900	500																																																														
*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0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1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지방이전 지원세제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조특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낙후지역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 낙후지역: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 낙후지역: (현행)		
				(감면한도) - (신설) 지방투자누계액 × 70%+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사후관리) - (신설)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 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1명당 1,500만원(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4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8)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감면요건 및 한도조정,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99조의9)	(감면한도)			(감면요건) - (신설)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감면한도)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 중소기업 외의 기업의 경우, 투자누계액의 50%+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기한) - 2025.12.31.	- (추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적용기한) - 2028.12.3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8)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9)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17)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0)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1)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2)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33)	(적용기한) - 2026.12.31.	(적용기한) - 2028.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중소기업 지원 확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법 제6조)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 -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 - 연간 수입금액 1억 4백만원 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조의3)	(공제대상 및 공제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적용기한) - 2025.12.31.	(공제대상 및 공제율) - (현행) - (추가)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10%(중견/중소기업) (적용기한) - 2028.12.31.
공익사업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24조)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일반기업: 10% - 사회적기업: 20%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현행) - 사회적기업: 30%
학교법인 등 특정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4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내용) - 법인세액의 3년 100% + 2년 50% 감면	(감면내용) - (현행)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년간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조특법 제85조의6)	(적용기한) - 2025.12.31.	감면 이후 추가로 5년간 30% 감면 (적용기한) - 2028.12.31.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제104조의16)	(적용대상) -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과세이연 방식) - (토지 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사후관리)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과 세이연금액 익금산입	(적용대상) - (추가) 유가증권* * 상장주식, 국·공채 등 (과세이연 방식) - (현행)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과세이연 요건) - (신설)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 → 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 → 유가증권 대체취득 (사후관리) - (추가)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 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과세이 연금액 익금산입
연결납세제도 보완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추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2)	(공제받은 법인) -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 손금을 익금산입 (결손 법인) -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 손금을 손금산입	(공제받은 법인) - (현행)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익금산입 제외 (결손 법인) - (현행)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 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연결법인이 승계받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76조의14, 제113조)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연결법인의 합병후 구분경리) -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 연결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연결법인의 합병후 구분경리) - 연결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국제조세 관련 규정 정비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57조의2)	(익금 범위)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공제한도금액) - 산출세액/(펀드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 합계액*) ×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 발생소득에 한정	(익금 범위) - (추가)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 (현행) * 외국납부세액 발생 여부와 무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증여) 범위 명확화 및 배당소득 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93조)	(증여범위) -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 (배당소득 대상)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증여범위)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배당소득 대상) - (추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제124조)	(신설)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98조의6)	(신설)	(제출의무 신설)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의무 신설 *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말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기타		
삼각합병시 합병대가의 범위에 합병 상대방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 추가 (법인세법 제16조)	(합병대가의 범위)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합병대가의 범위) - (현행)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제75조의7)	(시행시기) - 2026.1.1. 이후	(시행시기 유예) - 2027.1.1. 이후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조특법 제100조의18)	(가산세 항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항목) - (현행) - (추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추정사유 추가 (조특법 제104조의24)	(추징사유) -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 -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추징사유) - (현행) - (추가)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36조)	(추가 손금산입 한도) -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적용기한) - 2025.12.31.	(추가 손금산입 한도) - (현행) -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 제외업종 등은 현행과 동일 (적용기한) - 2028.12.31.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가. 총괄

- 소비세제 개정은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신설·연장하고, 가산세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세원관리 강화 및 세무행정 합리화를 도모했으며, 관세의 경우 면세 범위 조정을 통한 부담 완화와 마약류 단속 강화에 중점을 둠
 -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등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세원 관리 강화 및 세무행정 합리화를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수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 관세의 경우 항공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규정을 정비하고 마약류 등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단속 강화
-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합성 니코틴 원료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처음으로 부과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세율 적용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공제·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세원 관리 및 가산세율 인상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및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경우⁹⁾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인상

□ 관세 면제 확대 및 마약류 단속 강화

- 항공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희귀·필수 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중 핵심광물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
-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등·유해물품 등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해 물품제시를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주요 논의사항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합성 니코틴 원료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처음으로 부과됨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세율 적용
- 개정 취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

□ 세수효과

- (2026년) 920억원 (연평균) 2,577억원 (2026~2030년) 1조 2,885억원
 -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에 경감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적용한 결과임
 -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포함한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심사됨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9)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사업자가 아닌자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
- 동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에 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시 포함된 부대의견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부대의견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동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¹⁰⁾
 - 부대의견: ‘정부는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제도적 맹점으로 비과세되었던 합성니코틴 제품이 과세되고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존 천연니코틴 제품 납세자가 역차별 되는 문제, 경감세율 적용으로 합성니코틴 제품 가격경쟁력이 유지되면서 기존 영세 소상공인에 더하여 대기업까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등을 우려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여·야간 합의에 따라 경감세율에 관한 규정은 의원안대로 의결됨
 - 참고로, 당초 개정안에는 개정안 시행 전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나 동 시행 전까지 판매되거나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되어 의결됨

[표 55]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영환 의원안	개정
과세 대상	- 「담배사업법」 상 담배 -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일부로 제조한 것	- 「담배사업법」 상 담배 -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일부로 제조한 것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상황 전제	- 「담배사업법」 상 담배 -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일부로 제조한 것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 ¹¹⁾
세율	- 별표에 따른 종류별 세율	- 별표에 따른 종류별 세율 - 다만, 연초(연초 원료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일부로 제조한 담배 이외는 50% 경감세율(법 시행 후 2년간)	- 별표에 따른 종류별 세율 - 다만, 연초(연초 원료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일부로 제조한 담배 이외는 50% 경감세율(법 시행 후 2년간)

10) 2025.12.16.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국무회의 통과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1호 “담배”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

(2)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개정 취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201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 2017년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함
- 2020년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함
- 2022년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함

□ 세수효과

- (2026년) -1,280억원 (연평균) -1,410억원 (2026~2028년) -4,230억원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포함한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외부사업 감축 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유사한 취지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2건의 의원안과 병합되어 심사가 이루어짐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상쇄배출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안대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이 추가적인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배출권에 대하여 가격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
-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으로 의결됨

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의안번호 2214588, 본회의의결 2025.12.2.)

[표 56]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추경호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개정
적용기한	2025.12.31.	2028.12.31.	2030.12.31.	2028.12.31.	2028.12.31.

(3)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ℓ)당 56원씩 감면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개정 취지: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연안화물선박 선주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유종의 경유 전환 촉진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1년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제도 도입 (~2022.12.31.)
 -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2020)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주들은 선박연료유로 황 함유량이 높지만 가격이 저렴한 고허중유(HSFO) 대신 경유나 저황중유(LSFO)를 사용해야 했음
 - 경유는 황 함유량이 낮고 중유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박연료유를 경유로 전환 시 선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됨
 - 이에 선주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선박연료유의 전환 촉진을 위해 동 특례가 도입됨
- 2022년 개정세법에 따라 적용기한 3년 연장(2022.12.31. → 2025.12.31.)

□ 세수효과

- (2026년) -41억원
 -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포함한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정부안과 유사하게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다양한 의원안과 함께 병합하여 심사됨

- 논의 과정에서 동 특례는 황 함유량 규제 기준 강화 초기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제도로써 2022년 이후 한 차례 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성분에 대해 패널티적 성격으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임
- 또한 동 특례를 포함한 도저히방 자기발전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용 경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는 사실상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의 제도로써, 화석연료(보조금)에 따른 환경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일몰연장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여·야간 합의에 따라 동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표 5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서영교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정부안	윤준병 의원안	개정
적용기한	2025.12.31.	2027.12.31.	2028.12.31.	2030.12.31.	2026.12.31.

(4) 항공기 부품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WTO 민간항공기협정(TCA) 대상 물품 중 항공기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품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WTO 민간항공기협정(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항공기 부품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민간 항공기 부품품에 대한 관세 및 과징금을 철폐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가입
- 개정 취지: 항공산업 경쟁력 지원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1년 관세 면제 규정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까지 100%, 2025년 이후 20%p 씩 단계적 감면을 축소)
- 2025년 관세 면제 규정 적용기한 1년 연장(2025년까지 100%, 2026년 이후 20%p 씩 단계적 감면을 축소)

□ 세수효과

- (2026년) -226억원 (연평균) -293억원 (2026~2030년) -1,170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의원안 2건이 발의되어 병합 심사됨
- 정부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논의 과정에서 여·야 모두 항공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관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여, 여·야 합의에 따라 2028년 12월 말까지 관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박수영 의원안대로 의결됨

[표 58]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박수영 의원안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100%	80%	60%	40%	20%	100%	100%	100%	100%	0%
	- 2025년까지 100%, 2026년부터 20%p 씩 단계적 감면을 축소					- 2028년까지 100%, 이후 관세 면제 폐지				
구분	정태호 의원안					개 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				
	'25~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100%	80%	60%	40%	20%	100%	100%	100%	100%	0%
	- 2030년까지 100%, 2031년부터 20%p 씩 단계적 감면을 축소					- 2028년까지 100%, 이후 관세 면제 폐지				

[표 59]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업종별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개소세법 제1조제2항)	(신설)	(합성니코틴에 대한 세율 경감) - (감면율) 50% - (적용기한) 시행일부터 2년
담배 폐기 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개소세법 제20조의3제3항)	(공제·환급 사유) - 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등으로 반입된 경우 등	(공제·환급 사유 추가) - 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및 추징사유 확대(조특법 제105조제1항)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 (적용기한) 2025.12.31. - (추징사유)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 (적용기한) 2028.12.31. - (추징사유) 농민·임업인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어민이 아닌 자가 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전기 및 수소 이용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제107조의2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적용기한) 2025.12.3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적용기한) 2028.12.31. -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 (이월공제)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2개 과세기간(1년) 동안 이월공제 허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가점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6.12.3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11조의5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6.12.31.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40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조특법 제115조의2 신설)	(신설)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적용대상) 저도수 증류주·혼성주 - (적용세율) 「주세법」에 따른 세율(증류주 및 기타 주류 주세율 72%)의 70% - (수량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 - (적용기한) 2028.12.3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확대(조특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 (현행) - (추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2(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따른 의약품
조세제도 정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세법 제55조 제1항)	(의무 제출 대상 업종) - 음식점업, 부동산중개업 등	(의무 제출 대상 업종) - 음식점업, 부동산중개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부가세법 제60조제3항, 제4항)	(가산세율) - 가공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	(가산세율) - 가공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
세무서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범위 확대(부가세법 제74조제2항)	(자료제출 요구 내용) -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자료제출 요구 내용) - 장부·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포함) 또는 그 밖의 물건
관세 관련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제19조제5항)	(의무요건) -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 금액 수령 -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 제공	(의무요건) - (현행) - (삭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장기화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관세법 제42조의2제1항)	(감면사유)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감면사유) - (현행) - (추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세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기간 연장(관세법 제89조제3항)	(지정기간) - 3년	(지정기간) - 10년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기간 3년 연장 등(관세법 제89조제6항)	(감면기간 및 감면율) -2026년부터 단계적 감면율 축소	(감면기간 및 감면율) -2028년까지 관세 면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단위: %)					(단위: %)				
	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	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
	감면율	100	80	60	40	감면율	100	100	100	100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 면제 신설(관세법 제91조)	(장애인용품 등 관세 면제 대상) -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특수 용도 물품, 재활병원 사용 장애인 재활용 의료용구 등					(장애인용품 등 관세 면제 대상) -(현행) -(추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핵심광물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 관세 면제 대상) - 동식물 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등					(특정물품 관세 면제 대상) - (현행) - (추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자원(핵심광물)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명확화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법 제111조)	(중복조사 금지 대상) - 이미 조사받은 해당 사안 (사전통지 시점) - 조사시작 15일 전					(중복조사 금지 대상) -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사전 통지·미통지 사유 등 교부·변경 통지한 조사 대상) (사전통지 시점) - 조사시작 20일 전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규정 일괄 정비 (관세법 제137조의2,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 - 마약류 검사를 위한 승객예약 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우편물 등, 밀반입된 마약류 위치 정보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 -마약류 외에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하도록 개정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기한 조정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신청기한)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 신고 전					(신청기한) -(혼용비율 과세) 수입신고 전 -(원료 과세) 수입신고 전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관련 의무 명확화 (관세법 제216조)	(운송수단 관련 의무) - 운송수단을 정하여 신고 또는 승인받은 경우 신고·승인받은 운송수단 이용하여 운송 의무					(운송수단 관련 의무) -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의무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관세법 제235조의2)	(신설)					(간이절차 적용대상)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탁송품 또는 우편물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간이절차) - 담보 제공, 통관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택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 (관세법 제254조의2)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택송품 운송업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 단,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이 배송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제외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현행) - (삭제) - (추가) 택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 주소지를 세관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관세법 제264조의10)	(정보 요청 범위) - 법정 조건·성분·표시·품질 등 위반한 물품 정보 -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정보 요청 범위) - (현행) - (현행) - (추가) 법정 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관계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마약류등·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 (관세법 제265조)	(신설)	(마약류 등 신체 검색 근거) - 마약류등(마약류 및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무기류 및 그 밖에 유해물품 등의 신체 은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물품 제시 요구 가능 -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가산세 준용 조항 정비 (관세법 제42조제7항)	(가산세 준용) -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관련 조항 준용	(가산세 준용) -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개정 내용(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변경 등)에 맞추어 준용 규정 정비

4

자산세제 및 기타세제(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가. 총괄

- (국세기본법)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됨
 -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日)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월(月)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독촉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개정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그 외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 국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국세청의 매각위탁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 매각을 포함하도록 규정
- (교육세법)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등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됨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을 추가하며 과세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안을 수정하여 개정
 -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추가하며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수정하여 개정

-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준용규정 확대 및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이 최저한세에 미달한 경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 이외에도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

나. 주요 논의사항

(1)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
 - 개정 취지: 과세형평 제고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7년) 1조 5,280억원* (연평균) 1조 6,378억원 (2027~2030년) 6조 5,513억원
* 교육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금융보험업의 성장 및 최근 영업실적 개선을 감안, 응능부담 원칙,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과세형평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교육세율 조정과 관련한 2건의 의원안과 병합되어 심사가 이루어짐
 -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조세소위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세율인상 찬성) 1조원 초과 수익금액 발생 대형 금융·보험기관에 대한 담세능력을 고려할 때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교육세 증가액이 전액 고등교

- 육 재정 확충에 투입되어 교육세의 본래 취지인 교육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 (세율인상 반대) 금융회사들이 대출이자, 카드수수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세의 본래 목적과 사용처 간의 정합성, 나아가 교부금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조세소위 기간 중에 찬성과 반대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정부안으로 의결됨

[표 60]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세율 인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박수영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정부안	개정
교육세 세율 조정	- 세율 0.5%	- 서울: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3%, 1조원 초과 구간 0.5%	- 서울: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5%, 1조원 초과 구간 1% - 단, 「여신전문 금융업법」 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율 0.5%	- 서울: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5%, 1조원 초과 구간 1%	- 서울: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구간 0.5%, 1조원 초과 구간 1%

(2)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개선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시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1일당 0.022%)하는 방식에서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1월당 0.67%)하도록 개선
- 개정 취지: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세자가 1일 단위로 가산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는 불편을 개선하여 납세편의 제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세수효과

- (2026년) 1억원 (연평균) 2억원 (2026~2030년) 10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월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 요율로 계산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월 단위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함에 따라 정부안대로 의결됨
- 다만, 월 단위 계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납부시점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전환되어 납세의무자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표 61]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납부지연가산세 일(日) 단위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정

(3)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개정 취지: 체납자의 납부 능력, 고의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체납정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함
- 여·야 모두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실태확인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여 정부안을 수정의결함
- 정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납자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동 법 률 조항(條項)의 조제목을 ‘체납자 실태조사’에서 ‘체납자 실태확인’으로 명칭 변경

[표 62] 체납자 실태확인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신설)	(체납자 실태조사) -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체납자 실태확인) -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4)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예외적 납세의무자로 조합 추가
 - 예외적 납세의무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 등) 추가
- 개정 취지: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추가로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 및 과세 정합성 확보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세수효과

- (2026년) -2억원 (연평균) -2억원 (2026~2030년) -10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 및 위탁자별 과세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함
 -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재개발조합 등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현행 위탁자(조합원)에서 수탁자(조합)로 변경하여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 및 다양한 조합형 신탁사업 구조에서 위탁자별 과세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

- 논의 결과, 여·야는 정부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더라도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므로 법률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정부안을 수정의결함

[표 63]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납세의무자) -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 (예외) · 신탁주택: 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 그 조합이 위탁자 · 신탁토지: 예외규정 없음	(납세의무자) - (예외 추가) · 신탁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 신탁토지: 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등 위탁자	(납세의무자) - (예외 추가) · 신탁주택: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 신탁토지: 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등 위탁자

(5)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입법하기 위해 내국추가세 도입
 -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내국추가세 과세
- 개정 취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2년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모델 규정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를 국내에 도입하여 2024년부터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2021년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이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필라 해결책(2 Pillar Solution)을 마련
 - ※ 필라 1(Pillar 1): 기존 고정사업장 중심의 과세권 배분 기준을 보완하여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재배분
 필라 2(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15%)

- 2023년 및 2024년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가들과 모델규정 및 시행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규정 정비
 - 2023년에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도입국가와 동일하게 2025년부터 도입하도록 시행시기 변경
 - ※ 소득산입보완규칙: 최종모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미달시 추가세액을 다른 구성 기업들이 해당 관할국에 납부하는 방식
 - 2024년에는 다국적기업의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등 제도 보완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향후 과세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구조 및 기업별 상세 재무정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율과세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함
-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없이 합의함에 따라 정부안으로 의결함

[표 64] 내국추가세 도입 관련 개정 내용

현 행	정부안 및 개정
(신설)	(내국추가세 도입) -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중 최저한세율(15%) 미만 과세 *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 설립등록된 투과기업에도 적용 ※ 투과기업: 기업단위가 아닌 소유자, 구성원 단위에서 과세되는 기업 - 세액: [15% - 국내구성기업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 가액의 일부로 산정)을 제외한 금액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①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한 배분방식, ②국내구성기업간 합의에 따른 자율 배분방식 중 선택하여 배분 - 내국추가세액 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는 현행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과 동일하게 적용

[표 65] 자산세제 및 기타세제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세입기반 확충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 (교육세법 제5조)	(세율) - 0.5%	(세율) - 1조원 이하 구간 0.5% - 1조원 초과 구간 1%
상속 및 증여 관련 규정 명확화 등 보완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상증법 제3조의2)	(납부의무 대상)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납부의무 대상) - (현행) - (추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등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대상 등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추가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대상) -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 주식거래 등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 전환사채 등, 거래소 주식거래	(배우자 등에게 양도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대상) - (현행) - (추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 (현행) - (추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자)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상증법 제48조)	(사후관리 대상) -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 - (현행) - (추가)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
과세형명 및 과세 실효성 제고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중부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 (현행) -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부세법 제17조)	(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 (현행) - (추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토지분 주택건설사업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제104조의19)	(추징사유) -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미취득 시 추징	(추징사유) - (현행) - (예외사유 신설) 단,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편의 제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국조법 제6조)	(정상가격 조정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입증서류	(정상가격 조정시 제출자료) - (현행) - (추가)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국조법 제41조)	(발급 대상)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발급 대상) - (현행) - (추가)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내국추가세액 신설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에 내국추가세액 배분액 포함 (국조법 제63조)	(납부세액)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세액) - (현행) - (추가)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p>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 (국조법 제73조의2)</p>	<p>(산설)</p>	<p>(적용)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p> <p>(계산)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p> <p>(배분방식) - ① 또는 ② 중 택1 - 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 방식 규정 - ②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p>
<p>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국조법 제73조의2)</p>	<p>(산설)</p>	<p>(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투과기업: 기업단위가 아닌 소유자, 구성원 단위에서 과세 되는 기업 -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p>
<p>최소적용제외 특례 (국조법 제74조)</p>	<p>(최소적용제외 특례 요건) -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최소적용제외 특례 내용) -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p>	<p>(내국추가세 적용시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p>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75조, 제77조)</p>	<p>(요건) - ①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②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p> <p>(특례 내용) - ① 최종모기업의 직·간접 지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들의 그룹은 별도의 다국적기업 그룹인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 및 추가세율 따로 계산,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않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단위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따로 계산 - ② 공동기업그룹을 별도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p>	<p>(내국추가세액 배분액 적용시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등에 대한 특례 적용) - 내국추가세액 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 특례 적용</p>
<p>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79조)</p>	<p>(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내용) -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①별도 계산*, ②투시과세처리**, ③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p>	<p>(내국추가세 적용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p>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적용면제 특례 (국조법 제80조)</p>	<p>(전환기 적용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p>*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p>* '26.12.31. 이전 개사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p> <p>(일반적 적용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p>(내국추가세 적용시 적용면제 특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p>최초적용연도 특례 (국조법 제81조)</p>	<p>(최초적용연도 특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산입 	<p>(내국추가세 적용시 최초적용연도 특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p>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국조법 제84조)</p>	<p>(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p>*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p>(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국조법 제85조)</p>	<p>(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 (경정)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 (수시부과)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 (통지) 과세당국은 결정·경정 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 (징수) 과세당국은 결정·경정 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p>(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p>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 (국조법 제67조)</p>	<p>(대상조세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p>(배분대상 대상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 -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p>(대상조세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추가)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p>(배분대상 대상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조세특례 사후관리 내실화		
<p>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시 의견서 내용 구체화 (조특법 제142조)</p>	<p>(신설)</p>	<p>(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 제도 계속 존치 의견 제출 시 조세감면 필요성 등과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포함
<p>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의무 신설 (조특법 제142조의3)</p>	<p>(신설)</p>	<p>(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 의무화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영세사업자 등 지원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조특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징수 특례 적용 기한) - 2024.12.31. 이전 폐업 및 다음 요건 하나 충족 · 2020.1.1.부터 2027.12.3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이후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계속 · 2020.1.1.부터 2027.12.31.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	(영세개인사업자 징수 특례 적용 기한) - 2025.12.31. 이전 폐업 및 다음 요건 하나 충족 · 2020.1.1.부터 2028.12.3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이후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계속 · 2020.1.1.부터 2028.12.31.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 · (추가) 2026.1.1.부터 2028.12.31.까지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 노무제공자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조특법 제99조의15)	(신설)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2025.1.1.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 신청기간: 2026.1.1.부터 2028.12.31. 까지
벤처투자 등 지원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5조)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2028.12.31.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 및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추가(조특법 제117조)	(대상)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적용기한) - 2025.12.31.	(대상) - (현행) - (추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적용기한) - 2028.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세기본법」 관련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확대 (국기법 제10조제2항)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등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 (현행) - (추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국기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 납부지연가산세 일(日) 단위 산정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정 - (추가) 독촉장 송달비용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규정 명확화 (국기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 기한후 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등) -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한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 기한후 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 (국기법 제59조의2제1항)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등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 (현행) - (추가) 과세관청에 고충민원 제기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보완 (국기법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 (보정요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가능 - (지연통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통지가 어려운 경우 5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함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세징수법」 관련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 (국징법 제10조의2)	(신설)	(체납자 실태확인) -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국징법 제103조제1항)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업무) - 공매, 수의계약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업무) - (현행) - (추가) 가상자산의 매각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I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1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15건의 개정사항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정됨
 - 「소득세법」 1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관세법」 1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국세징수법」 3건

가. 「소득세법」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을 포함하면서 2단계 누진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을 적용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과세대상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외주식을 추가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 주식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제118조의9~제118조의18)
- 정부안은 국외주식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모든 주식에 대해 국내주식과 동일한 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로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외주식의 범위를 모든 주식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국외주식에 대한 세율을 국내주식과 달리 중소기업 주식 등은 10%, 그 외 주식 등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외에 해제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제77조의3제1항)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외에 해제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조정하여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제88조의5, 제89조의3)
 - 정부안은 가입자 요건에 따라 조합원·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2025.12.31.까지는 비과세, 2026.1.1.~2026.12.31. 5% 분리과세, 2027.1.1. 이후는 9% 분리과세)하려는 것이었으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총급여 5천만원 초과자에서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로 수정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3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4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것 등으로 수정(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3단계 누진세율을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적용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구간은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 추가로 동 제도 시행 시기를 20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에 적용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20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으로 수정하였으며, 적용대상의 요건을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직전 3년 평균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설정한 정부안에 대해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수정

(2)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에 대해 감면한도 산정시 연구개발우수인력 고용 1인당 감면한도를 1,500만원 추가하는 것에서 2,000만원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수정(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더해, 감면한도 산정시 연구개발우수인력 고용 1인당 감면한도를 1,500만원 추가하는 것에서 2,000만원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수정

(3)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제106조제1항제12호)
 -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나, 이를 2026년 말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제106조의2제1항제2호)
 -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나, 이를 2026년 말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나, 이를 2026년 말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제111조의5제1항)
 -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나, 이를 2026년 말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다. 「관세법」

- 마약류·유해물품 등 휴대·은닉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 휴대·은닉의심자에 대해서도 신체 검색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제265조)
 - 정부안은 마약류·유해물품 등 휴대·은닉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을 포함한 마약류 등·유해물품 등 휴대·은닉의심자로 수정

라. 「종합부동산세법」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추가되는 조합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7조)
 -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예외적 납세의무자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 등)’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수정하여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개정
 - 정부안은 예외적 납세의무자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수정
-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추가하는 주택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17조)
 -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주택에 현행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수정하여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개정

마. 「국세징수법」

-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실태조사 명칭과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10조의2)
 - 체납자 실태조사 명칭을 체납자 실태확인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려던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를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수정
- 가상자산 매각 위탁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정부안을 3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제103조)
 - 국세청 가상자산 매각 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에서 3개월 유예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 면제사유를 신설하려던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15조)
- 정부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등의 감치 면제사유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감치 신청 면제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반영하지 않음

[표 66] 2025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소득세법」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제118조의9~제118조의18)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 포함) - 국외주식등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요건 미적용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율) - 국내주식과 동일 세율 적용(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 포함) - 국외주식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율) - 중소기업 주식 등은 10% - 그 외 주식 등은 20%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77조의3)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적용기한) - 좌동 (추가)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5.12.31. → 2028.12.31.)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조정하여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제88조의5, 제89조의3)	(과세특례 기준 및 적용기한) - 소득발생기간 기준에 따라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 상품가입일 기준에 따라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① 농·임·어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가입자 -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기한 3년 일몰 연장	(과세특례 기준 및 적용기한) - 좌동 ① 농·임·어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가입자 -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기한 3년 일몰 연장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가입일	'28.12.31.까지	'29.1.1.~'29.12.31	'30.1.1.부터	가입일	'28.12.31.까지	'29.1.1.~'29.12.31	'30.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②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가입자(농·임·어업인 조합원 제외) - 비과세 일몰 종료 및 저율 분리과세 시작				②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가입자(농·임·어업인 조합원 제외) - 비과세 일몰 종료 및 저율 분리과세 시작			
	가입일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가입일	'25.12.31.까지	'26.1.1.~'26.12.31	'27.1.1.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제104조의27)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대상: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① 또는 ②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과표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 시행시기: 20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 적용기한: 2028.12.31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대상: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① 또는 ②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 과세특례: 좌동 - 대상: 좌동 - 적용세율: 4단계 누진세율(과표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시행시기: 20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 적용기한: 좌동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77조의3)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추가) - 연구개발우수인력 고용 1인당 감면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 감면한도: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현행)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서비스업, 연구개발우수인력 2,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제12호)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적용기한) - 2025.12.31. → 2026.12.3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의2제1항제2호)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적용기한) - 2025.12.31. → 2026.12.3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적용기한) - 2025.12.31. → 2026.12.3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5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적용기한) - 2025.12.31. → 2026.12.31.
「관세법」		
마약류등·유해물품 등 휴대·은닉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신설(제265조)	(신체 검색 대상) - 마약류, 무기류 및 그 밖에 유해물품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물품 제시 요구 가능 -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신체 검색 대상) - 마약류등(마약류 및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무기류 및 그 밖에 유해물품 등의 신체 은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물품 제시 요구 가능 -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제7조)	(예외적 납세의무자)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예외적 납세의무자)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 등)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제17조)	(종부세 추징 대상 주택 추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부세 추징 대상 주택 추가)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령으로 정하는 주택
「국세징수법」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제10조의2)	(체납자 실태조사) -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체납자 실태확인) -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④ ①~③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가상자산 매각위탁 시행 시기 변경(제103조)	(가상자산 매각위탁 시행시기) - 2026.7.1. 이후 시행	(가상자산 매각위탁 시행시기) - 2026.10.1. 이후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 미반영(제115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 심판청구 등이 계속중인 경우 -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미반영)

2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19건
 - 「부가가치세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3건, 「개별소비세법」 1건, 「관세법」 3건

가. 「부가가치세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최은석 의원안, 제60조)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10%로 인상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가산세율을 4%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은석 의원안, 제74조)
 -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나.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배제 요건에 상속 및 증여 포함(차규근 의원안, 제38조의2)
 - 현행법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는 대상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처분’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반영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대상지역 확대(이종욱·안도걸의원안, 제71조의2)
 - 인구감소지역 외에 추가로 인구감소우려지역¹²⁾ 혹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¹³⁾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자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동 과세특례에 추가하자는 안도걸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변경 및 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재욱·윤준병·윤영석·추경호·안도걸 의원안, 제98조의9)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취득가액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거나,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1~4년 연장하자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과세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하는 안도걸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신설(정태호 의원안, 제91조의25)
 - 청년의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자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결과, 원안대로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김상훈·박수영 의원안, 제8조의3)
 -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 또는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중견기업의 경우 5%)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12)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13)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최은석 의원안, 제85조의6)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현행과 같이 최초 소득이 있는 과세연도부터 5년(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외에도 추가로 5년간 30%, 이후 영구적으로 20%로 확대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기간을 현행 5년 외에도 추가로 5년간 30%를 감면하도록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소영 의원안, 제104조의36)
 - 한국산업은행의 출연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에의 출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2028년 말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결과, 원안대로 반영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도걸·박정하 의원안, 제121조의33)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말에서 2030년 또는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동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3)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추가(강선우 의원안, 제106조)
 -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당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관세 면제 대상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도 조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저도수 특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안도걸·박수영 의원안, 제106조)

- 저도수 특성주류(하이볼 등)에 대해 일반 주류 대비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원안(「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내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의원안을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

(4) 「조세특례제한법」 - 기타 분야

- 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정태호 의원안, 제99조의15)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납액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5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결과, 원안대로 반영
-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 시 의견서 내용 구체화(정성호 의원안, 제14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시 조세감면의 필요성·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근거 등을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결과,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서 내용의 구체화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의무 신설(김영환·정성호 의원안, 제142조의3)
 -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신설하려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결과, 원안대로 반영

다. 「개별소비세법」

-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신설(김영환 의원안, 제1조제2항)
 - 합성니코틴 원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초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나 동 시행 전까지 판매되거나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라. 「관세법」

-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 및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박수영·정태호 의원안, 제89조)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2028년까지 관세가 면제되도록 관세 면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2029년부터는 관세를 부과하는 박수영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 관세 면제 대상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추가(강선우·정태호 의원안, 제91조)
 -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관세 면제 대상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면제(윤영석·이연희 의원안, 제93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관세 면제 대상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표 67] 의원발의안 중 개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부가가치세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최은석 의원안, 제60조)	(가산세율) - 거짓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 → 10%	(수정반영) - 거짓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 → 4%
등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최은석 의원안, 제74조)	(자료제출) - 등록사업자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수정반영)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배제 요건에 상속 및 증여 포함(차규근 의원안,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 (현행) 해당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이연 기능 - (추가) 해당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할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이연 기능	(원안반영)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대상지역 확대(이종욱·안도걸 의원안, 제71조의2)	(현행)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 신규취득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이종욱 의원안)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외에 인구감소우려지역 소재 주택을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 (안도걸 의원안)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외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을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	(안도걸 의원안 원안반영)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대상 변경 및 특례 적용 기한 연장(윤재옥·윤준병·윤영석·추경호·안도걸 의원안, 제98조의9)	(현행) - 과세특례 대상: 대통령령(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정하는 요건 갖출 것 - 적용기한: 2025.12.31. (윤재옥 의원안) - 적용기한: 2028.12.31. (윤준병 의원안) - 적용기한: 2030.12.31. (윤영석 의원안) - 과세특례 대상: 취득가액 9억	(안도걸 의원안 원안반영)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출 것</p> <p>- 적용기한: 2025.12.31.</p> <p>(추경호 의원안)</p> <p>- 적용기한: 2028.12.31.</p> <p>(안도걸 의원안)</p> <p>- 적용기한: 2026.12.31.</p>	
<p>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신설(정태호 의원안, 제91조의25)</p>	<p>(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신설)</p> <p>- 가입대상: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② 소상공인 중 업종, 매출요건 충족, ③ 중소기업 취업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요건 충족)</p> <p>- 요건: 1인 1계좌, 납입한도 6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년</p> <p>- 특례내용: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p> <p>- 적용기한: 2028.12.31</p>	<p>(원안반영)</p>
<p>「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p>		
<p>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김상훈·박수영 의원안, 제8조의3)</p>	<p>(김상훈 의원안)</p> <p>-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p> <p>- 공제율: 10%</p> <p>(박수영 의원안)</p> <p>- 별도 공제요건 없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p> <p>- 공제율: 10%</p>	<p>(수정반영)</p> <p>-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 또는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p> <p>- 공제율: 협력중소기업 10%, 협력중견기업 5%</p>
<p>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최은석 의원안, 제85조의6)</p>	<p>(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p> <p>-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p>	<p>(수정반영)</p> <p>-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p>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감면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영구적으로 확대 - 공제내용: 최초 소득발생 이후 3년 100% + 2년 50% + 5년 30% + 이후 20%	10년으로 확대 - 공제내용: 최초 소득발생 이후 3년 100% + 2년 50% + 5년 30%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이소영 의원안, 104조의 36)	(한국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말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원안반영)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도걸·박정하 의원안, 제121조의33)	(안도걸 의원안) - 적용기한: 2030.12.31. (박정하 의원안) - 적용기한: 2031.12.31.	(수정반영) - 적용기한: 2028.12.31.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확대 (강선우 의원안,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 추가) - 「관세법」 제91조제4호의2(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따른 의약품 추가	(수정반영) - 「관세법」 제91조제4호의2(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따른 의약품 추가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안도걸·박수영·제115조의 2 신설)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법률) 「주세법」 - (적용대상) 저도수 증류주·혼성주 - (적용세율) 「주세법」에 따른 세율(증류주 및 기타 주류 주세율 72%)의 70%	(수정반영) -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 (적용대상) 저도수 증류주·혼성주 - (적용세율) 「주세법」에 따른 세율(증류주 및 기타 주류 주세율 72%)의 70% - (수량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 - (적용기한) 2028.12.31.
「조세특례제한법」 - 기타 분야		
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신설 (정태호 의원안, 제99조의 15)	(생계형채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 2025.1.1. 이전 발생한 채납액으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원안반영)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 시 의견서 내용 구체화 및 심층평가 결과 국회 보고의무 (정성호 의원안, 제142조)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 제도 계속 존치 의견 제출 시 조세감면 필요성 등과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반드시 포함 (심층평가 결과 국회 보고) -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근거 등을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수정반영) -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 시에만 조세감면 필요성 등과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의무 신설 (김영환·정성호 의원안, 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 의무화	(김영환·정성호 의원안 원안반영)
「개별소비세법」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김영환 의원안, 제1조제2항)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감면율) 50% - (적용기한) 법 시행일부터 2년 - (경과규정) 개정안 시행 전 제조·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나 동 시행 전까지 판매되거나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간주	(수정반영) - (감면율) 50% - (적용기한) 법 시행일부터 2년 - (경과규정) 미반영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 및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박수영·정태호 의원안, 제89조)	(박수영 의원안)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 2028년까지 100%, 이후 관세 면제 폐지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100% 100% 100% 100% 0% (정태호 의원안)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연도별 감	(박수영 의원안 원안반영)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면율) 2030년까지 100%, 2031년부터 20%p 씩 단계적 감면율 축소 '25~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100% 80% 60% 40% 20%	
관세 면제 대상에 희귀병 의 약품 추가 (강선우·정태호 의원안, 제 91조)	(강선우 의원안) - (면제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정태호 의원안) - (면제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 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수정반영) - (면제 대상) 한국희귀·필수의 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 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확 보한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면제 (윤영석·이연희 의원안, 제 93조)	(윤영석 의원안) - (면제 대상) 해외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것 (이연희 의원안) - (면제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 보한 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것 등.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 면세 제한 가능	(수정반영) - (면제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 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 른 핵심광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1 부대의견

- 국회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가. 「소득세법」 부대의견: 1건

- 내항선 및 연근해어업 선원의 월급여액 비과세소득 규정 신설(문대림·박성훈 의원안)
 - 내항선 및 연근해어업 선원의 월급여액 비과세 소득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의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등 간 세제지원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내항해운 산업발전,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내항해운 산업발전,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7건

(1) 소득세 분야 부대의견: 3건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 제외(이소영 의원안)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합계액에서 제외하는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구별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을 재산요건으로 적용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변화, 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 집행상의 문제, 임대차보증금 외 다른 부채의 차감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 효과, 지급 요건·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임미애·윤준병 의원안)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을 폐지한 개사육농장주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지는 의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의 경우 동 법에 따라 생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게 되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폐업 농가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변경 및 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재옥·윤준병·윤영석·추경호·안도걸 의원안)
 - 현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있는데, 최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이미 6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동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동 과세특례 적용 시 최근의 분양가 상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근의 분양가 상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2) 법인세 분야 부대의견: 3건

- 지방이전 지원세제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등(정부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보완장치만으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동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천하람·추경호·안도걸·이인선·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 비과세 특례 및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개정안과 함께 비과세 특례 및 공제 대상 기업의 업력기간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자는 개정안이 논의되었는데, 업력기간 제한 완화는 중소기업투자촉진특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업력 제한 완화를 포함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김상훈·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 학교법인의 수익자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과세이연 적용대상 자산을 유가증권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3) 소비세 분야 부대의견: 1건

-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추경호·이병진·서영교·주철현 의원안, 정부안)
 -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관련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 「관세법」 부대의견: 1건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강선우·정태호 의원안)
 - 조세소위 논의 취지를 반영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병 치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부대의견: 1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범위 확대(최은석 의원안)
 - 특례주택(상속주택, 대체취득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으로서 조세소위 논의취지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마. 「국세징수법」 부대의견: 1건

-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정부안)
 -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실태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임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 68] 부대의견 채택 안건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소득세법	내향선 및 연근해어업 선원의 월급여액 비과 세소득 규정 신설(문대림·박성훈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내향해운 산업발전, 내향선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소득세 분야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 기관 대출금 제외 (이소영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 효과, 지급 요건·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개사육농장주가 지급 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임미애·윤준병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폐업 농가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변경 및 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재욱·윤준병·윤영석·추경호·안도걸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근의 분양가 상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이전 지원세제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등(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분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천하람·추경호·안도걸·이인선·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소비세분야	한 과세특례 확대(김상훈·안도걸 의원안, 정부안)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이병진·서영교·주철현 의원안, 정부안)	수정반영	기획재정부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이병진·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이병진·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관세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강선우·정태호 의원안)	수정반영	기획재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병 치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범위 확대(최은석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세징수법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정부안)	수정반영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채납자, 재산제세 채납자, 생계형채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향후 논의과제

- **내항선 및 연근해어업 선원의 월급여액 비과세 소득 한도 확대 관련 논의**
 - 내항선원 등의 비과세 소득은 월 20만원 이내의 선원승선수당인 반면, 외항선원 등의 비과세소득은 1974년 월 30만원에서 2023년 월 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항선원의 낮은 실질소득,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
 - 국회 심사과정에서 내항상선은 국가비상 시 전략물자 수송·운반 역할을 하며, 내항선원의 어려운 노동환경, 물가상승,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등 간 세제지원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내항해운 산업발전 방안,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내항해운 산업발전,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및 기준의 적정성 관련 논의**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며, 법률상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은 금융기관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합계액에 포함됨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합계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에 포함된 대출금이 재산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가구별 부채를 반영한 재산요건 적용의 필요성이 논의됨
 - 이에 대해 정부는 가구별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 기준을 재산요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순자산 기준 적용 시 지급대상자의 변화,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 집행상의 문제, 임대차보증금 외 다른 부채 차감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효과와 지급 요건·기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 효과, 지급 요건·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관련 논의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과세특례 대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2025년 말에 도래하는 일몰기한 연장 혹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의원안이 다수 발의됨
- 심사과정에서 최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세제지원의 일몰을 연장하는 동시에 과세특례 대상을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지정 시 최근의 분양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근의 분양가 상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의 효과성 관련 논의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현행 제도는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지역 도시로의 이전 효과는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 이전을 유인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지방 중소도시, 특히 영남, 호남, 강원 등으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 더불어 지방이전 이후 실질적인 기업의 기능을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며 현행의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 관련 논의

- 국회 심사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및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함께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력 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에 대해 유사 지원제도의 경우 업력 10년까지 창업 기업으로 간주해서 지원하고 있는 점, 코스닥 상장 소요 기간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 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 관련 논의

- 도·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연안여객·화물선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면제 등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를 유지할 당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 이에 정부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국회는 관련 세제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으로써, 2026년 세법개정안 심사 시 정부의 검토 결과 등과 함께 관련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관련 논의

-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음
- 전략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시설투자 뿐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전주기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찬성의견이 제기됨

- 반면, 국가전략기술 등 공제대상에 이미 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우대공제가 존재하며,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 기업규모 및 업종별 과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됨
-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번 개정세법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되, 향후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논의

-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자의 재산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나, 상속자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부안이 제출되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음
-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과세방식 전환 시 세수감소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이 모두 제기됨
 - 아울러 과세방식 전환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됨
- 심사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금번 개정세법에는 과세방식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되, 향후 정부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 록
- 확정된 2026년 총수입
예산 및 정부안 대비 조정
내역

1 2026년 총수입 예산

- 2026년 총수입 예산은 675.2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추경예산(642.4조원)대비 32.8조원(5.1%)이 증가한 수준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은 390.2조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372.1조원) 대비 18.1조원(4.9%) 증가
 - 국세수입 증가는 임금상승, 개인사업자 소득여건 개선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전년 추경예산 대비 +5.2조원)와 함께 2025년 법인실적 개선세 지속에 따른 법인세 증가(+3.6조원),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3.3조원) 등에 기인
 - 2026년 세외수입 예산은 38.4조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37.6조원) 대비 0.8조원(2.2%) 증가
 - 2025년 한국은행의 수익 개선에 따른 잉여금 증가(+1.8조원)와 국가철도공단에 교부된 출연금 조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경상이전수입 증가(+1.0조원)를 (※)NXC의 물납주식매각 계획에 따른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감소(-2.6조원) 등이 상쇄한 결과
 - 2026년 기금수입 예산은 246.6조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232.8조원) 대비 13.8조원(5.9%) 증가
 -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증가(+4.7조원)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주식 매매차익 증가 등에 따른 기타재산이자수입 증가(+5.9조원) 등에 기인

[부표 1] 확정된 2026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

	2024 실적	2025추경예산	2026확정예산	2025 추경예산 대비	
					(%)
총수입	594.5	642.4	675.2	32.8	5.1
국세수입	336.5	372.1	390.2	18.1	4.9
세외수입	29.6	37.6	38.4	0.8	2.2
기금수입	228.2	232.8	246.6	13.8	5.9
- 사회보장기여금	92.8	96.5	102.0	5.5	5.7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정부안 대비 조정 내역

가. 총수입

- 2026년 총수입은 675조 1,86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674조 1,854억원)에서 1조 9억원 증액
 - 국세수입은 390조 2,334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120억원 감액
 - 주식분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감액), 합성니코틴의 담배과세 대상 포함(증액) 등 반영
 - 세외수입은 38조 3,94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1조 155억원 증액
 - 한국은행 수익 개선에 따른 잉여금 수입 증가(증액) 등 반영
 - 기금수입은 246조 5,582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26억원 감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법정부담금(감액) 등 반영

[부표 2] 2026년 총수입 조정 내역

(단위: 억원, %)

세 목	2025	2026			2025년 추경예산 대비	
	추경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예산		(%)
총수입	6,424,254	6,741,854	10,009	6,751,863	327,609	5.1
국세수입	3,720,850	3,902,454	-120	3,902,334	181,484	4.9
세외수입	375,680	373,792	10,155	383,947	8,267	2.2
기금수입	2,327,724	2,465,608	-26	2,465,582	137,857	5.9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국세수입

- 2026년 국세수입은 390조 2,334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90조 2,454억원) 대비 120억원 감액
 -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감액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는 증액됨
 - 주식분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유지에 따라 소득세 967억원 감액
 - ※ 당초 정부 예산안에 주식분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가 포함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없이 대주주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
 - 반면, 거짓 세금계산서 제재 강화, 합성니코틴의 과세대상 포함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는 각각 289억원, 558억원 증액

[부표 3] 2026년 국세수입 조정 내역

(단위: 억원, %)

세 목	2025	2026		증 감		
	추경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예산	2025 추경예산대비	%
총국세	3,720,850	3,902,454	-120	3,902,334	181,484	4.9
일반회계	3,614,604	3,786,015	-120	3,785,895	171,411	4.7
○ 내국세	3,291,519	3,439,013	-120	3,438,893	147,494	4.5
1. 소득세	1,268,192	1,321,175	-967	1,320,208	52,016	4.1
2. 법인세	835,671	865,474		865,474	29,803	3.6
3. 상속세 및 증여세	154,437	170,163		170,163	15,726	10.2
4. 부가가치세	833,292	865,750	289	866,039	32,747	3.9
5. 개별소비세	87,479	93,786	558	94,344	6,865	7.8
6. 증권거래세	38,454	53,753		53,753	15,299	39.8
7. 인지세	8,836	7,734		7,734	-1,102	-12.5
8. 과년도수입	65,156	61,178		61,178	-3,978	-6.1
○ 교통·에너지·환경세	140,012	164,122		164,122	24,110	17.2
○ 관세	84,093	72,214		72,214	-11,879	-14.1
○ 교육세	57,765	64,433		64,433	6,668	11.5
○ 종합부동산세	41,215	46,233		46,233	5,018	12.2
특별회계	106,246	116,439		116,439	10,193	9.6
○ 주세	32,093	31,451		31,451	-642	-2.0
○ 농특세	74,153	84,988		84,988	10,835	14.6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다. 세외수입

- 2026년 세외수입은 38조 3,94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7조 3,792억원)에 비해 1조 155억원 증액
 - 주요 증액 내역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한국은행잉여금 증액(8,500억원), 방위사업청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증액(1,247억원) 등

[부표 4] 2026년 세외수입 조정 내역

(단위: 억원, %)

세 목	2025	2026			증 감	
	추경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예산	2025 추경예산대비	%
세외수입	375,680	373,792	10,155	383,947	8,267	2.2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기금수입

- 2026년 기금수입은 246조 5,582억원으로 정부안(246조 5,608억원)에 비해 26억원 감액
 - 주요 감액 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법정부담금 감액(27억원) 등

[부표 5] 2026년 기금수입 조정 내역

(단위: 억원, %)

세 목	2025	2026			증 감	
	추경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예산	2025 추경예산대비	%
기금수입	2,327,724	2,465,608	-26	2,465,582	137,857	5.9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25년 12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유월에디디자인(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834)

ISSN 3022-3032

© 국회예산정책처, 202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531-002055-10
ISSN	3022-3032

